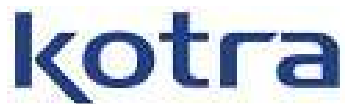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1
- 2. 한국과의 주요이슈 /2

II. 경제

-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3
- 2. 주요 산업 동향 /8

III. 무역

- 수입규제제도 /10
- 관세제도 /11
- 주요인증제도 /12
- 지적재산권 /12
- 통관운송 /13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16
- 외국기업 투자동향 /18
- 우리기업 투자동향 /29

2. 사업관리

- 노무관리 /29
- 조세제도 /31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39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42
- 2. 물가정보 /43
- 3. 바이어발굴 /45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46
- 5. 이주정착 가이드 /48
- 6. 출장가이드 /56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위 치	중앙아시아
면 적	447,400km ² (한반도의 약2배)
기 후	대륙성기후(1월 평균: -3도℃ ~ +3도℃, 7월 평균: +26도℃ ~ +2 도℃)
수 도	타쉬켄트 (Tashkent)
인 구	2680만 명 ('07년)
주요도시	Tashkent(211만 명), Samarkant(39만 명), Bukhara(23만 명), Fergana (20만 명)
민 족	우즈베크인(71.0%), 러시아인(9%), 한국인(1%), 기타(19%)
언 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종 교	수니파 이슬람교(70%), 시아파 이슬람교(20%), 그리스 정교(18%)
건국(독립)일	1991.9.1 (러시아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실권자)	Karimov 대통령
입 법 부	단원제(250석)
정 당	여당 (People's Democratic Party) 야당 (Adolad), 야당(Batan Tarakiyoti)
정부성향	좌경중립, 친러시아

나. 경제지표('07년 기준)

G D P	US\$ 209억 (2008년 추정)
실질경제 성장률	9.5% (2007년)
1인당 GDP	US\$772 (2008 추정)
실 업 율	0.9% (2008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	12.5% (2007년, IMF기준)
화폐단위	Sum
환 율	1 US\$=1310sum (2008.7월 기준)
외 채	약 US\$40억 (2008 추정)
외환보유고	US\$92억(2008년 추정, 금 보유고 제외)
산업구조	농림업(31.1%), 제조업(25.2%), 서비스(43.7%)
교역규모	○ 수출(US\$ 89.9억) ○ 수입(US\$ 52.4억)(2007년)
교역품	○ 수출 (면화, 금, 가스, 농산물) ○ 수입 (기계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다.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92) 투자보장협정('92) 과학기술협력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97)
교역규모	748 백만 불 (우리나라의 수출) 104 백만 불 (수입) (2007년)
교 역 품	자동차부품, 승용차, 냉연강판, 건설중장비, 전자부품 (우리나라의 수출) 면화, 우라늄(수입)
투자교류	96건 US\$ 375백만 불 (2007년 누계): 전무(국내유치)
교 민	약 1300명(우즈베크 여권을 지닌 한국인 이주자 제외)

2.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국과의 관계 내력

92년 1월 국교 수립 후 양국간 관계는 우호협력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93년 12월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고, 95년 12월 서울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2006.3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 등 6차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위 인사교류 실적

92.6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94	김영삼 대통령 방우
95.2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97.4	할릴로프 국회의장 방한
99.8	아지모프 재무장관 방한
99.10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2000.6	김용준 헌법 재판소장 방우
2000.9	최종영 대법원장 방우
2000.10	김호식 관세청장 방우
2001. 1	이브라지모프 노동부 장관 방한
2001. 3	허경만 전남도지사 방우
2003. 6	통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단 방우
2001. 5	카밀로프 관세청장 방한
2001. 8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방우
2003. 2	심상명 법무장관 방우
2003. 4	김용덕 관세청장 방우
2003. 5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 방우
2005. 5	노무현 대통령 방우
2005. 10	김원기 국회의장 방우
2006. 9	한명숙 총리 방우
2007.9	남기명 법제처장 방우
2007.12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방우
2007.12	권오규 경제부총리 방우
2008.5	한승수 총리 방우

나. 양국간 교류 현황

92년 국교 수립 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양국 국가원수가 상호 방문한바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항상 상대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성장 모델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들 중 한국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1) 한-우즈베키스탄 경험관계평가

한-우즈베키스탄 경제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원 및 원유, 가스 등 자원이 필요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산업화를 위해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양국 정상회담 및 총리 회담의 결과로 우라늄, 금광 개발 사업 및 원유, 가스전 개발 탐사 사업 등 중요한 양국간 경험 사업을 추진 중이다.

2)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2007.11월 한-우즈베키스탄 양국간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석유 화학 단지 건설 프로젝트, 광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광산개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향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다. 양국간 교역 현황

양국간 교역은 97년 최대 9억 7천만 불까지 달했으나 그 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7년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15.2% 증가한 748백만 불, 수입은 159.2% 증가한 104 백만 불을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 등 투자진출 한국기업들에 의한 부분품 및 원부자재 수입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주로 면사, 면직물, 우라늄,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對 우즈베키스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불)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247	359	493	649	748
수입	79	77	29	40	104
수지	168	282	464	609	644

자료: KOTIS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현황 전반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수년간 거시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빠른 경제 성장과 큰 폭의 대외흑자 및 외환 보유고 증가 등으로 특징지어짐. 이러한 성과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 조정 과 양호한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IMF 등 국제기구들은 평가하고 있음.

세제개혁 및 세금부담경감 등 일부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었지만, 구조 개혁의 속도는 전반적으로 느린 편임. 은행시스템의 개선, 무역 및 대외결제시스템의 자유화,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 등을 IMF 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기조를 관찰해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이 즉각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움.

우즈베크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피하고 하는 이유로는 우즈베크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시장가격이 높게 유지됨으로써 무역흑자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는 때문이며, 또한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석유가스, 통신분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는 국제금융기구와는 달리 우즈베크의 정치 경제개혁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 열악한 투자환경과 더불어 정부의 외환통제, 높은 수입관세 등 과도한 민간부문 활동규제로 서방의 투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됨

□ 은행 부문 강화 조치- 최저 자본금 인상

2008년부터 상업은행 설립 시 최저 자본금을 현재 5백만 달러에서 5백만 유로로 인상하고, 개인은행(Private bank)은 최저자본금을 현재 2.5백만 달러에서 2.5백만 유로로 인상조치.

우즈베크 정부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2007년 동안 6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중 77%가 소기업 또는 개인기업에서 생겨났다고 발표함. 2007년 경제 성장률은 공식 적으로 9.5%이나, 1인당 GDP는 카자흐스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임(구매력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에 의한 2007년도 우즈베크 1인당 GDP는 US\$2,500, 카자흐스탄 US\$10,500)

나. 최근 주요 산업 동향

우즈대우자동차는 2007년도 17만대를 생산하였으며, 2008년에는 2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생산 차종은 마티스, 넥시아, 다마스 등 3종이며, 소비자층이 고급차종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 라세티 조립을 확대하고 GM의 Epica 등 쉬보레 모델 3종을 2008년도부터 조립판매 할 계획에 있음. 수출은 2005년도에 53,000대에서 2006년도에 82,500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07년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CIS국가로 112,000대가 수출됨.

2007년 전반적인 에너지생산 부진은 국내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가스분야는 러시아에 대한 가스 수출증가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Gazprom은 2007년에 2006년도 보다 33% 증가한 우즈베크 가스 130억 입방미터를 구입할 예정이며 이러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우즈베크는 인근 중앙국가로부터 수입 감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IU는 우즈베크 가스생산은 2007년에 660억 입방미터(2006년도는 620억 cu meters)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LUKoil이 Kandym에서 30억 입방미터의 가스생산 시작으로 생산량은 더 증가 예상할 것으로 전망됨.

우즈베크 정부는 서방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으나 CIS, 중국, 일본 및 한국 등에 대해서는 신규 개발 탐사 등을 위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이중 하나인 아랄해 광구의 경우 PSA(생산물공유협정)를 통하여 Uzbekneftegaz, Lukoil(러시아), Petronas(말레이시아), CNPC(중국) 및 대한석유공사(한국)가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물은 Uzbekneftegaz와 기타 파트너들간에 50:50으로 분배할 것으로 알려짐. 2007년 4월부터 3년간의 예정으로 8천만불 규모의 탐사를 개시하며 2단계에서는 2억불을 투입하여 시험 채굴할 것으로 알려짐. 아랄해 광구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1조 입방미터로 추산되고 있음.

우즈베크는 충분한 매장량과 석유정제품의 자급자족할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몇 개 유전은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경제지표

지 표		2004	2005	2006	2007	2008
GDP	십억 불	12.0	13.6	15.3	18.0	21.7
	성장률(%)	7.7	7.0	7.2	9.5	8.5
	1 인당 GDP	\$464	\$520	\$577	675	925
인구(백만 명)		25.9	26.2	26.5	26.8	27.1
소비자물가상승률(%)		9.1	12.3	11.4	12.5	15.5
평균 환율(1 USD)		1,020.0	1,115.0	1,238	1,288	1,330
교역	전체(백만 USD)	7,324	8,067	11,171.4	14,227.1	15,290
	수출(백만 USD)	4,263	4,757	6,389.8	8,991.5	9,910
	수입(백만 USD)	3,061	3,310	4,781.6	5,235.6	5,380
	수지(백만 USD)	1,202	1,447	1,608.2	3,755.9	4,530
경상수지(백만 USD)		1,215.3	1,949.1	2,872	4,615	5,733
외환보유고(백만 USD)		2,146	2,895	4,500	6,750	9,250
국가외채(십억 USD)		4.8	4.3	3.9	3.9	4.1
실업률 %		0.6	0.7	0.8	0.8	0.9

주 1: 2004-2005 : 실제수치, 2006:2007 EIU 추정치

주 2: 2005 인구는 추정

주 3: 외환보유고는 금 제외 수치

주 4: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IMF 기준

자료: E.I.U.

다. 2008-9년 경제 전망

1) 경제성장

2008-9 년 경제는 안정적인 수출과 투자증가에 힘입어 8-8.5%대 성장이 예상됨. 러시아 등 우즈베크의 주요 무역교역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제상품가격도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즈베크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우즈베크 경제는 국내 금융시장의 발달부진과 국제 금융시장에 통합된 부분이 적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국제금융시장의 영향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움.

러시아 및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가스, 원유 등 에너지부문 투자가 증가하고, 통신 및 일부 제조업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입이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투자증가는 가스 및 자동차 등 수출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연쇄적으로 자동차부품, 석유 및 가스개발에 연관된 자본재 수입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소비재 상품 수입에 대한 정부통제로 전체수입량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전망됨.

2008 년도는 2007 년의 9.5%성장보다는 다소 하락이 예상되지만 안정적인 수출과 국내 투자증가로 7%대 성장이 예상됨. 미국경기 후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영향하에 놓일 잠재적 위험이 있지만, 러시아 등 우즈베크의 주요 무역교역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제상품가격도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즈베크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우즈베크 경제는 미발달된 국내 금융부문과 국제 금융시장에 통합된 부분이 적어서, 국제금융시장의 영향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움. 2009 년도에는 상품가격의 하락과 러시아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어 성장률은 6.5%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 및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가스, 원유 등 에너지투자가 증가하고, 통신 및 일부 제조업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입이 예상됨. 이러한 투자증가는 가스 및 자동차 등 수출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연쇄적으로 자동차부품, 석유 및 가스개발에 연관된 자본재 수입증가를 가져올 것이나, 소비재 상품 수입에 대한 정부통제로 전체 수입량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전망됨.

2) 인플레이션

국제 경제조사기관들은 2007 년도 우즈베크 인플레이션이 12.5% 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상품수출 호조에 따른 외환 유입증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임금 및 연금 등의 인상과 2007 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식품가격의 인상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지적됨.

2008-9 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은 두 자리 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력수출상품인 1 차 상품 가격 상승에 의한 외환유입이 증가하면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며, 정부의 임금 및 연금인상,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식품가격이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우즈베크 정부는 2007 년도 물가상승률을 6.8%로 발표하였으나 실제 인플레이션은 2007 년도 말에 12.5%에 이른 것으로 IMF 등에서는 전망하고 있음. 상품수출 호조에 따른 외환 유입증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임금 및 연금 등의 인상과 하반기에 있었던 식료품 가격의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적됨

2008-9 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은 두 자리 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력수출상품인 1 차 상품 가격 상승에 의한 외환유입이 증가하여 통화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3) 환율

우즈베크 정부는 수출경쟁력을 지지하기 위해 솜화의 평가절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증가에 따른 외환의 국내유입으로 솜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억제될 것임. 2008 년도 9 월 초 환율은 1 달러 당 1,312 솜을 기록하였으며 2009 년 말에 솜화는 1 달러당 1,400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4) 대외부문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 등 CIS 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호조와 가스, 금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08-09 년의 평균 경상수지 흑자는 GDP 의 27%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 가격은 2008 년도에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09 년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가스는 2007 년도에 이어 2008 년도에 수출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늘 리면서 우즈베크의 중요한 외화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2009 년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기가 성장하면서 산업설비 등 자본재 수입은 증가할 것이나 국내산업 보호 우선 정책으로 우즈베크 정부는 소비재 수입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사용하여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 등 해외거주 우즈베크인들의 본국 송금액 증가도 경상수지 흑자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 (러시아거주 우즈베크인의 연간 송금액: US\$12-13 억 예상)

우즈베키스탄 주요경제지표 전망

지 표	2006	2007	2008	2009
GDP 실질성장률(%)	7.3	9.5	8.5	8.0
실업률(% , 평균)	0.8	0.8	0.9	1.1
소비자 물가상승률(% , 평균)	14.2	12.0	14.5	14.0
소비자 물가상승률(% , 연말)	11.4	12.5	15.5	13.5
재정수지(GDP 대비 %)	0.5	-0.1	-0.1	-0.3
수출(FOB, 백만 불)	6,389.8	8,991.5	9,910	11,100
수입(FOB, 백만 불)	4,781.6	5,235.6	5,380	6,190
경상수지(백만 불)	2,872	4,615	5,733	6,272
경상수지(GDP 대비 %)	18.8	25.5	26.5	24.7
대외부채(연말, 십억 불)	3.9	3.9	4.1	4.3
평균환율(1 USD, 평균)	1,220	1,264	1,311	1,379
환율(1 USD, 연말)	1,238	1,288	1,330	1,400
환율(1 EUR, 연말)	1,862	2,056	2,180	2,256

주 1: 2006-7 년도 실업률, 경상수지는 추정치

주 2: 2008-9 년 EIU 전망

주 3: 소비자물가상승률은 IMF 조사에 근거

자료: E.I.U

우즈베키스탄 주요경제지표 전망

지 표	2006	2007	2008	2009
GDP 실질성장률(%)	7.2	9.5	7.2	6.5
실업률(% , 평균)	0.8	0.8	0.9	1.1
소비자물가상승률(% , 평균)	14.2	12.0	12.0	10.8
소비자물가상승률(% , 연말)	11.4	12.5	11.5	10.0
재정수지(GDP 대비 %)	0.5	-0.4	-0.1	-0.3
수출(FOB, 백만 불)	5530	8,050	10,000	11,000
수입(FOB, 백만 불)	3,590	4,480	5,380	6,190
경상수지(백만 불)	2,872	4,615	5,824	6,172
경상수지(GDP 대비 %)	18.8	25.5	27.8	26.3
대외부채(연말, 십억 불)	3.9	3.9	4.1	4.3
평균환율(1 USD, 평균)	1,220	1,264	1,311	1,379
평균환율(1 USD, 연말)	1,238	1,288	1,330	1,400
평균환율(1 EUR, 연말)	1,862	2,050	2,077	2,144

주 1: 2006, 7 년도 실질성장률, 환율은 실제수치

주 2: 2006-7 년 EIU 추정치

주 3: 2008-9 년 EIU 전망

주 4: 소비자물가상승률은 IMF 조사에 근거

자료: E.I.U

2. 주요 산업 동향

가. 농업

우즈베키스탄 전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은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분야이다. 우즈베키스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은 면화에 집중된 경작구조를 곡물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영농장의 민간 기업화 및 개인농장의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경작 면적의 확대를 위한 농지개량사업, 관개시설 확충사업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농업육성 정책에 따라 다른 CIS 국가들은 독립 이후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후퇴를 보였으나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은 거의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면화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곡물 증산운동에 따라 면화의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수량 및 일조량의 변화와 기계 사용의 증가에 따른 수율(Yields)의 감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율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정부는 면화경작 시 플라스틱 필름의 사용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는 폭우나 한파의 영향을 줄이고 수분의 증가를 억제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면화는 10년 전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출비중 2/5에서 현재 수출의 1/5을 점유하는데 불과하다. 면화분야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낮은 수매가격과 정부의 개입, 구조개선 미흡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면화생산량은 95년도 3.9백만 톤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매년 3.2백만 내지 3.6백만 톤의 생산량을 보여왔음. 2007년도 생산은 3.6백만 톤을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대우 등을 필두로 원면을 가공해 생산하는 면사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원면의 수출을 대체하고 있다.

나. 에너지

우즈베키스탄은 '06년도 전기 493억KWh, 석유 및 가스 농축액 5.4백만 톤, 천연 가스 620억㎥을 생산하였는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세계 10위 생산국이다. 이는 자급 자족에는 충분한 것은 물론이고 인근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등 일부 석유제품은 주유소의 부족과 외화획득을 위한 정부의 수출확대로 일부 지역에선 부족을 겪고 있고 오히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지에서 밀수가 횡행할 정도이다. 또한 현지 생산 휘발유의 옥탄가가 낮고, 유연이기 때문에 고급차종의 경우 에는 유연 휘발유 사용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 건설

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실정상 건설산업은 토목, 설계, 시공 분야는 물론 건축자재 생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하나이다.

현재 연간 27억불 내지 30억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여겨지는 건설산업은 환율의 지속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현물 보유심리를 자극해 불경기 중에도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라. 전자

우즈베키스탄 산업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전자산업으로 이중에서도 가정용 전자제품 분야는 '9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불모지대라고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이 진출해 가전제품을 조립 생산 하다가 2004년 12월 현재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부품을 거의 전부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형편으로 부품 수입을 위한 외화환전이 여의치 않은 것이 철수의 주요 원인이다. 완제품 소비시장으로는 잠재력이 크지만 전자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지 가전업체가 LG 전자 및 삼성전자의 부품을 수입 컬러 TV 조립생산을 하고 있다.

마. 화학공업

화학공업은 주로 석유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원유가 충분히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내륙국가로 운송이 어려워 원유의 수출보다는 가공품의 수출이 유망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생산성이 낮기는 하지만 광물성 비료, 살충제, 합성세제, 레신(카프로락탐, 아세테이트, 셀룰로스, 니트로 아크릴산 등의 화학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외 에도 인산비료 공장, 소다공장 등이 건립되고 있음. 한국의 가스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스루길지역 가스개발과 연계하여 석유화학단지건설 프로젝트가 검토단계에 있다

바. 철강금속산업

우즈베키스탄에는 CIS 전체에서 2위 규모의 Al-Malyk제련소가 있어 철강금속사업은 비교적 발달해 있으며 연간 100톤 정도의 금이 생산되고 있고 이외에도 구리, 아연 등의 비철금속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 시절 설치된 Al-Malyk 제련소의 경우, 생산 능력에 비해 우즈베키스탄 내 생산량이 작아 제련에 필요한 구리나 아연 등을 인근국가에서 사와야 하는 형편이다.

사. 통신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분야가 통신분야인데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 주요 지역의 교환기가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되었고 기존 선로의 광케이블로의 교체 작업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은 연 40%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공식통계에 의하면 2008년 7월까지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900백만 명, 인터넷 가입자는 200백만 명 이르고 있다. 인구 2600만 명의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가입자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무역

1. 수입규제제도

가. 수출입 관리 제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비교적 고율의 수입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비세(excise)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내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주재국의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는 없으나, 수입계약등록 및 환전제한을 통해 수입은 사실상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수입제한품목의 설정을 통한 수입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품에 대한 환전 및 환전규모를 정하여 수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한편 언더밸류를 통한 외환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선적전 검사 제도(PSI)를 일부 품목에 한해 98년 도입하였다. '03년 12월 기준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은 육류와 육류 반제품, 우유 제품, 식용유 종자, 주류와 음료, 담배, 기계류(정부 투자 프로그램에 의해 수입되는 것에 한함)이다. 해당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ITS(영국), SGS(스위스) 또는 Control Union(독일)의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수입업체들은 계약 체결 후 자국의 거래은행, 대외경제부, 세관에 계약을 등록하여야 한다. 동 계약등록 사실을 근거로 하여 수입통관 및 판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을 매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나. 수출입 허가, 금지, 신고 품목 등 관세, 비관세 장벽

우즈베키스탄은 강력한 자국산업 육성 정책 및 엄격한 외환 통제로 까다로운 수입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및 특정 품목의 수출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가 실시되며 수출 허가 품목은 일부 귀금속 및 귀금속 제품, 위험물, 군수물자 및 우라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 수입 계약은 대외관계경제부에 등록되어야 하나 정부 예산으로 수입할 경우와 우즈베크 정부 지불 보증으로 수입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 지불 비율이 50%를 초과 하는 우즈베크 법인이나 자체 자금으로 수입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도 대외관계경제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대외관계경제부에 등록되지 않는 수입 건이라 하더라도 수출입금융 취급 허가 은행 및 세관에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우즈베크 수출입 관련 규정에 따르면 등록 대상 수입 거래 금액의 15% 이상 선불이 허용되지 않으며 금액 기준으로 미화 10만 불 이상의 선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 수출업체의 중개은행이 지불 보증 서한을 발행해야 한다.

□ 수출입 제한 품목 및 수입 규제

- 수출입 제한 품목(대외관계경제성의 허가 대상 품목)
 - 무기, 귀금속 및 동 제품, 우라늄, 방사물질 관련 기기
- 수출에 따른 특혜 미 제공 품목
 - 면사, 원면,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귀금속, 비철금속, 고철

- 수출 금지 품목
 - 곡물, 빵, 밀가루, 가금류, 육류, 분유, 차, 설탕, 에틸 주정, 골동품, 식용유, 가축원료, 비철금속 스크랩, 누에고치와 부산물
- 수입 금지 품목
 - 미풍양속, 공공 질서 위해 각종 매체(출판물, 테이프 등)
- 트랜지트 운송 금지 품목
 - 무기, 폭발물, 항공기와 부품, 무기 제조설비, 독극물, 수입금지 품목
- 수출 제한 품목(대외관계경제부 계약등록품목)
 - 무기, 귀금속/보석 및 동제품, 우라늄, 방사성 물질 관련 기기, 비철금속, 압연철강 및 고철, 석유, 천연가스, 면사
- 수출입 제한 품목(해당기관의 허가 대상 품목)
 - 노동력 파견 및 외국 근로자 고용, 영화 및 비디오, 오디오 제품 수입, 과학기술 및 발명품의 수출, 대외 투자, 예술품의 수출, 희귀 동식물 수출, 오존 파괴물질 수출입
- 자국 내 상품거래소에서 경화로 구매하여 수출해야 하는 상품
 - 해바라기 기름, 지방, 화강암, 몰리브덴, 시멘트, 석유와 석유제품, 질소, 의약품, 비료, 염료, 타이어, 종이, 견사, 모, 면사, 합성직물, 에어컨, 냉장고, 트랜스포머, 전기기기, 자동차 등등
-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
 - 육류 및 육류 반제품, 우유 제품, 과일, 주류 및 음료, 담배, 기계장비(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하는 것에 한함), 전기기기(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하는 것에 한함)

2. 관세제도

주재국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4단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상품분류에 따른 수입관세는 3%-100%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관세율이 품목별로 대통령령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므로 물품의 수출입시는 반드시 최근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종전에는 관세 부과 기준의 Invoice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최근에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관세부과는 쌍무협정에 쌍방간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32개국에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지정세율의 두 배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최혜국 국가이외 에는 실질적인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20%, 소비세 5%-50% 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의 관세율을 구분하면 합성직물의 경우 20%, 의류의 경우 30%, 비철강제품 5-20%, 통신기기 30%, TV, VCR, 카세트 라디오 등은 30%, 차량의 경우 30%-60%, 중고차의 경우 최소 100%이다.

주재국의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 또는 선적전 검사제도는 없다. 정부는 수입제한품목의 설정을 통한 수입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품에 대한 환전 및 환전규모를 정하여 수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환전가능품목으로 밀가루, 버터, 식용오일, 약품, 직물, 냉동고, 자동차 부품 등, 환전제한 품목으로 식료품, 통조림, 과자, 껌, 담배, TV, 세탁기, 고급가구, 합성신발 등, 환전 금지 제한품목으로 맥주, 주스, 케첩, 유리그릇, 승용차, 카펫, 폴리에스터 직물 및 CD, 실크, 악세사리 및 미술제품, 자동차의 악세사리 등을 정하고 있다.

□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알아보는 법

관세율은 단일 제도로 운영되며 정부 문서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관세율 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며 그 중 업체는 다음과 같다.

- 업체명: Norma Hamkor
 - 웹사이트: www.norma.uz
 - 전화: +(998-71)137-0778, 137-4529
 - 이메일: info@norma.uz
- 업체명: PRAVO
 - 웹사이트: www.pravo.uz
 - 전화: +(998-71)144-0054, 144-9454
 - 이메일: sales@pravo.uz

3. 주요인증제도

공산품 수입 시에 규격인증, 안전증명 등이 필요하며, 식품 수입 시에도 안전 검사 등이 필요하다.

공산품 규격 인증 및 식품 안전 확인 등은 Th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of Uzbekistan(UZstandard Agency)에서 시행하며, 특별히 인위적인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3년 1월 1일부로 소비재 상품의 우즈베크어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수입 소비재품의 경우 우즈베크어 라벨링이 요구된다.

4. 지적재산권

가. 개황

우즈베키스탄의 지적재산권은 "발명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법률"에 의거 보호되는데 동법에 따르면 발명은 특허권의 형태로 12년간, 산업디자인은 실용신안권의 형태로 10년간 각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외국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5년 4월 19일부로 베른 협약의 우즈베키스탄 국내 발효를 위한 법령을 시행, 153번째 베른 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협약 발효에 따라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각종 지적 재산권이 국제 기준에 따라 보호될 예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지적 재산권 또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적 재산권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른 협약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가장 오래된 국제 협약으로 1886년에 처음 체결되었으며 이후 지난 세기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수정되어 왔다. 우즈베키스탄 내 베른 협약의 발효에 따라 다양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의 베른 조약 가입에 따라 그 동안 외국산 영상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방송하여 왔던 우즈베키스탄 텔레비전 방송국들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이다. 현 우즈베크 저작권법에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저작권법안 제정을 추진하여 2006년 6월 입법화 되었다.

나. 특허권

특허권을 관장하는 기구로 특허국(Patent Office)가 있는데 내국인의 경우 직접출원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함께 변리사(Patent Attorney)를 거쳐야 한다. 특허 제출일 이후 특허국은 기존 등록여부 및 기술분석을 거쳐 특허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 게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특허가 발급된다.

우즈베키스탄의 특허 관련법은 1994년 5월 5일 발효된 N 1062-XII 법령으로 2002년 8월 29일 N 397-II로 수정되었다. 이 법은 특허권 신청,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 심사 절차, 특허 발급 및 사용 등 특허 관련 제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 상표권

우즈베크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www.patent.uz에서 법규, 등록절차, 수수료 등(영문)을 검색할 수 있다.

라. 저작권

저작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내 대부분의 저작권은 State Intellectual Property Fund에 소속되어 있는데 동 기구는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을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5.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개황

통관절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지만 업무전산화의 미비, 공무원의 행정 능력 부족 및 부패 등으로 수입 통관 시 일반적으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뇌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관세율 책정 기준가격을 시장가격의 조사를 통하여 책정함으로써 동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크게 관여되고 있어 어려움이 큰 편이다.

나. 수입신고

수입 신고 시에는 세관에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 대외경제성(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에서 발급한 무역업허가서
- 도착통지서(D/O), B/L(Railway Bill 또는 Airway Bill)
- 포장명세서
- Invoic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관세감면 대상 품목인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다. 물품검사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원은 철도역, 공항 및 보세창고 등에서 수입자의 입회하에 실제 도착한 물품과 송장상에 기재된 내역을 비교한다.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금속 등은 세관 외에 별도의 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세관 내 지정된 구역에서 실시한다.

주재국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4단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상품분류에 따른 수입관세는 0%~30%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관세율이 품목별로 대통령령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므로 물품의 수출입시는 반드시 최근의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종전에는 관세 부과 기준의 Invoice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최근에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 운송

우즈베키스탄은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세계 유일의 이중육지폐쇄국가(double landlocked country: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2개 국가를 거쳐야 하는 국가)로 물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과의 교역시 일반적으로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 부산->블라디보스톡->노보시비르스크->타슈켄트) 혹은 TCR(중국 경유)를 이용하며 중동의 두바이를 물류 거점으로 삼고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내륙 국가로 항구는 없으며 타슈켄트에서 한국에서의 운송 비용은 물동량 추이 등에 따라 상이하나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미화 3천500가량 소요된다.

1) 우즈베크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 운송업체

- Name of the company: Turbo GLS Co., Ltd
- Tel: (822) 2231-1004 / Fax: (822) 2275-3194
- E-mail: turbocargls@turbogls.com
- site : www.turbogls.com

- Name of the company: Woojin Global Logistics
 - Tel: (822) 3706-3418/3464 / Fax: (822) 756-3690/3860
 - E-mail: woojin@woojingl.com
- Name of the company: First Express International
 - Tel:(822)333 5711,(822)3141 0123 / Fax:(822)333 6344, (822)3141 1515
 - Home page: <http://firstexp.co.kr>
- Name of the company: Ecovoice Express
 - Tel:(822)333 5711,(822)3141 0123 / Fax:(822)333 6344, (822)3141 1515
 - Home page: <http://www.ecovoice.co.kr>

2) 우즈베크 내의 주요 운송 회사

Name	Contact information
"INTERNATIONALE CONTAINER TRANSPORT GMBH", Germany	Tel: (998 71) 120 71 65, 252 22 14 / Fax: (998 71) 252 22 14 E-mail: ict@skz.uz / http://www.ict-transport.com
"ITS TASHKENT", Japan	Tel: (998 71) 169 06 90 / Fax: (998 71) 169 06 88 E-mail: itsjapan@sarkor.com
"PANALPINA WORLD TRANSPORT"	Tel: (998 71) 120 77 39, 120 77 42, 152 51 19 Fax: (998 71) 120 77 40 E-mail: alpinaos@rol.uz / http://www.panalpina.com
"UZVNESHTRANS", Uzbekistan	Tel: (998 71) 268 74 76, 268 74 75 / Fax: (998 71) 268 73 37 E-mail: info@uzvt.uz / http://www.uzvt.uz
"BEKK CURIER"	Tel: (998 71) 252 17 86, 252 17 87, 252 17 88 Fax: (998 71) 252 39 09 E-mail: express@bekk.uz / http://www.tnt.com
"MIS TAKA" Uzbek-Latvian Joint Venture	Tel: (998 71) 262 18 72, 262 79 16 / Fax: (998 71) 262 18 68 E-mail: market@mstk.com , uzmistaka@mstk.com.uz http://www.mistaka.com
"UZTEMIRYULCONTAINER", Uzbekistan	Tel: (998 71) 136 11 53, 138 88 77 / Fax: (998 71) 136 26 59 E-mail: info@uzjdk.com / http://www.uzjdk.com
"SHOSHTRANS" Uzbek-Russia-Swiss Joint Venture	Tel: (998 71) 133 79 07, 138 87 17 / Fax: (998 71) 140 09 75 E-mail: refer@shoshtrans.com / http://www.shoshtrans.com
"FRANCESCO PARISI SpA", Spain	Tel: (998 71) 144 29 12 / Fax: (998 71) 144 35 29 E-mail: elyor.yusupov@francescoparisi.com http://www.francescoparisi.com
"GREEN INTEGRATED LOGISTICS CO., LTD." Korea	Tel: (998 71) 235 86 49, 235 47 66, 235 46 92 Fax: (998 71) 235 57 10 E-mail: green-tas@green-logistics.com http://www.green-logistics.com
"IBRAKOM FZCO", UAE	Tel: (998 71) 252 69 91, 252 69 93 / Fax: (998 71) 252 14 11 E-mail: elena.kanarskaya@kuehne-nagel.com http://www.kuehne-nagel.com
"METRO CO., LTD", Korea	Tel: (998 71) 137 11 09, 137 13 24 / Fax: (998 71) 137 11 61
"SINOTRANS LANDBRIDGE TRANSPORTATION CO.,LTD.", China	Tel: (998 71) 120 44 12, 132 26 56 / Fax: (998 71) 132 11 07 E-mail: info@sinotrans.uz / http://www.sinotrans.uz
"LOGISTEAM", Kazakhstan	Tel: (998 71) 132 20 34, 133 27 40 / Fax: (998 71) 132 25 69 E-mail: info@logisteam.net / http://www.logisteam.net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우즈베키스탄은 '07년 말 기준으로 인구 2,680만 명으로 비교적 인구가 많은 편이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 지역까지도 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동남아 등지보다 비교적 근면할 뿐 아니라 대부분 고등 교육을 이수하여 문맹률이 매우 낮고 인건비도 단순근로자가 월평균 80\$미만(제세미포함)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아울러 토지는 국가소유로 대지 및 공장의 임차료가 매우 저렴 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료 등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조간접비는 매우 낮은 편인 점도 장점이다.

한편 물류이동의 어려움 및 고율의 관세로 인해 현지에서 물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완제품 수입시보다 상당한 물류비용 및 관세의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인근지로의 수출 시에도 CIS 국가간 관세협약에 의해 한국에서의 수입시보다 관세의 절감이 가능해 한국으로부터 CIS국으로 직접 수출시보다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07년 투자진출 총 누계액은 375백만 불로서 러시아 다음의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외국인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 통계기준, 현지 금융을 포함할 경우 총 투자누계는 10억불 상당으로 추정) 대우방적 등 대기업 이외에도 중소 기업을 포함 전체 1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투자 원리금의 송금보장, 국방 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Negative system을 운영하고 있는 등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물론 외국인투자는 등록사항으로 대외경제성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2천만 불 이상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각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등록이 거절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15만 불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저 외국인 투자 비율(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인정해주는 하한)은 30%로 정해져 있어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도 가능하다.

1)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에 투자 진출하는 기업의 최대의 문제점은 현지화 환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건 별로 환전신청을 하여 심사 후 환전 받으며, 기업별 환전 쿼터제는 폐지되었다. 제조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 전액은 구좌에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 중 회사의 경비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건 별 심사 후 환전이 가능토록 되어있다.

통상적으로 외화 환전에 적어도 2-6개월씩 걸리는 등 현지화를 외화로 환전 받기가 매우 힘들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대우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외화환전 문제를 주요인으로 하여 철수하였다.

환전 문제 이외에도 현지 관료들의 횡포와 비효율적 업무추진, 법률 및 제도의 미 정비 등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지 합작투자자와의 마찰 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투자결정 이전에 현지 법률과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지 관료 등과의 인맥형성도 권장할 사항이다. 또한 합작투자 계약 시에는 예상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명문화해 둬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마찰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2) 투자유치정책

우즈베키스탄의 투자유치정책은 내용상 다른 나라의 것과 같은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제한 분야도 방위산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며 투자원리금의 송금도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원리금의 송금은 현재 주재국내 외환사정 악화로 인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년 "Annual Investment Program"이라는 선별된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대부분은 수백만 불 이상의 투자자가 요구되는 분야가 대부분이고 동 투자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사업에 착수할 경우 일반 투자와는 달리 조세감면, 외환환전 및 기타 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특혜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3) 투자유치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는 '94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과 '98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자보호법"(Foreign Investor Guarantees Law)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적인 혜택부여에 관한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On Additional Incentives and Privileges Granted to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s) 등 3가지 법률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투자에 관한 혜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법규는 대통령령이고 나머지 두 법규는 기본적인 방향만이 언급되고 있다.

다. 투자인센티브

□ 외국인투자제한

법률상 명문화된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는 "정부기관의 특별허가를 득해야 하는 분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산업별 승인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내각 회의	-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제조, 수리, 판매 - 폭발물, 유독물질의 제조, 운송 및 판매
전력 생산업	-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가공, 판매 - 파이프라인, 교량, 터널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 - 관광업
내무부	-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 화재경보시설의 설계, 운영, 수리
보건부	-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
중앙은행	- 은행, 증권, 보험업

2. 외국기업 투자동향

우즈베키스탄은 대형 외국인투자를 강력히 선호하며 중소 외국인투자는 환영하지 않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금 정책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생산품으로 수출이 가능하거나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자를 특히 선호하고 있음

그러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및 특혜” 관련 대통령령을 1996년 11월 30일 발효시킨 바 있음.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특정 요건에 부합될 경우 감세, 세금 면제 및 기타 혜택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여토록 되어 있음.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은 다음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법무부에 등록되어야 함

- 최소 납입 자본금 미화 15만 달러 이상
- 1인 이상의 외국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함
- 외국인 보유 지분을 30% 이상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EWFI) 매출의 60% 이상이 자체 생산 제품 혹은 서비스 판매로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투자생산기업(PEWFI: Production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 일정 세금 및 관세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되는데 세금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7년간 세금 면제(우즈베크 정부의 투자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 기업 등록 후 1년간 세금 면제, 2년 차 75% 세금 면제, 3년 차 세금 50% 면제(농촌 지역에 투자할 경우)
- 기업 등록 후 1년간 75% Profit tax 면제, 2년 차 50% 면제
- 토지세 2년간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생산기업 포함)은 특정 상품을 생산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수출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됨. 내각 특별 의결 내용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우즈베크 정부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의 중요성 정도, 투자 규모 그리고 기타 요인들에 따라 추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도 있음. 투자 규모가 미화 2천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내각의 동의를 필요함

주의할 점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 등록된 기업들에 한해 외국인투자생산기업(PEWFI: Production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 우즈베크 정부가 제공 하는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임

2005년 4월 11일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서명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에 대한 추가 조치”라는 명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민영화 프로그램, 기업 설비 현대화 및 재건 프로그램 및 농촌 지역 고용 창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기간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면제되는 세금은 소득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개발 및 토지개발세, 환경세, 중소기업단일세 및 도로세 등으로 투자 금액 미화 3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3년간, 300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은 5년간 그리고 1천만 달러 이상은 7년간 이들 세금이 면제됨.

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실업률이 높은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 지짜크, 카쉬카다리아, 수르다리아, 수르한다리아, 코레즘 지역, 나보이, 안디잔, 나망간 및 페르가나의 농촌 지역들에 대해 투자해야 하며 합작투자 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등록 후 경화 혹은 신규 첨단 설비 형태의 투자를 실행해야 하며 면세 혜택으로 확보된 자금 전액을 우즈베키스탄 내에 재투자해야 함.

우즈베키스탄 정부 보증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 이자소득은 소득세 산출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요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5년간 균등 상각해야 하며 면세혜택 자금으로 보전되어야 함.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이 향후 변경이 되더라도 면세혜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에 의하면 면세 혜택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폐업할 경우 해당 기업의 과실송금 및 자본금의 우즈베키스탄 국외 반출은 기 면제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장 및 보호 조치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배당 이윤 세율 인상
- 추가 요건 도입, 과실송금 절차 복잡화, 외국인투자자 소득 국외 송금 제한(외국인투자 기업의 파산, 도산,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보호, 외국인투자자의 범죄 행위 혹은 행정 절차 위반 혹은 법원 및 중재원 판결에 따른 과실 송금 중단 등으로 인한 비차별적 법률 절차 적용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과실 송금 제한은 제외)
- 투자 규모에 대한 제한 조치 도입 및 외국인투자 최소 투자 금액의 인상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한 기타 추가 요건 도입
-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도입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비자 연장 추가 절차 도입 및 외국인투자 시행 추가 요건 도입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장 및 보호 조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승인토록 하고 있으며 보호 신청 서류 작성 시 외국인투자자는 해당 기관에 보호 조치 적용을 통보해야 함.

이와 함께 기업 활동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 또한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기업 폐쇄, 은행 계좌 중지, 금융 제재 조치 등은 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조치가 가능하게 되며 세무서 또한 기업의 조세 및 통화 관련 범죄 행위가 입증된 이후라야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며 대검찰청의 조세통화범죄 담당국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됨.

아울러 기업 활동 통제 기관들의 책임자들은 기업들에 대한 불법 조사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며 법정에 소환될 수도 있어 기업들이 이들 기관들의 불법 조사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을 법정 소송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과 이들 기관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제 법정이나 중재 법정에서 해결될 수 있음.

2005년 8월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민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한 대통령령 시행령을 의결, 발효시켰는데 이 시행령은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호 보장 및 조치”에 대한 관련 법규 3조 4항에 명시된 외국인투자자 보장에 대한 것과 4조에 명시된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호 추가보장 조치에 대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입법화 되어 시행되는 법률이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경우에도 이번 시행령으로 보호받게 되는 외국인투자자는 향후 10년간 동 시행령이 적용됨.

이번 시행령은 투자 보장 신청에 대해 “외국인투자자 권리 보호 보장 및 조치”에 대한 관련 법규 3조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의 직접 통보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보호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관에 투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정부기관 리스트는 이번 시행령 말미에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통보 절차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의무이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보호법에 명시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10월 “기업 조사 제도의 축소 및 개선에 대한 추가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 범위, 대상 회수 등을 축소하고 개선하며 경제 주체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국가통제 관련법 준수 의무 또한 강화하고 있음.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체 및 농부들에 대한 정기 기업활동 및 재무조사 등은 4년에 1회로 국한하고 있으며 기타 기업들에 대해서는 3년에 1회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신규 창업된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기업 활동 및 재무 조사는 기업 등록 후 2년간은 면제토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기업이 조사결과에 따른 해당 관청의 지시를 모두 이행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벌과금 납부 등을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제재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담당 관료들의 불법적 조사 행위가 있을 경우 범죄행위로 기소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조사를 받은 해당 기업에 대해 재정적인 보상도 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 대통령령은 “기업 활동 통제 정부 부서 조정 국가 위원회” 신설을 승인하면서 이 위원회에 2006년 기업 조사일정 수립 권한과 함께 명백한 사유에 근거한 기업에 대한 비상 조사허가 권한도 부여하고 있음.

가. 참고: 생산물공유법협정(PSA)

1) 개요 및 세제혜택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물공유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관련 법령은 2001년 12월 7일에 제정된 법령이 있으며 생산물 공유협정의 체결, 시행 및 종료 전반의 관계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

생산물공유협정은 주로 광물 자원의 생산에 적용되는데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 및 채굴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PSA 협정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자는 지출한 경비를 생산물의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은 상업적인 발굴이 시작된 해로부터 시작되고 해당 연도에 보상되지 않은 경비는 계약기간 내에서 다음해에 보상받을 수 있다. 경비 중 세금, 사업 이나 다른 위험에 대한 보험, 투자자의 판매경비, 벌금 등은 경비에서 제외된다.

외국인투자자는 소득세, 토지세, 지하자원 사용세, 물사용세, 환경오염비, 급여에 대한 세금 등은 지불해야 하며, 그 외의 세금은 면제된다.

국내 법인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된 제품, 작업,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며, PSA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제품, 작업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투자자의 생산지분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2) PSA 사례

러시아의 가스회사인 Gazprom 사가 우즈베키스탄의 Shakhpakhty 가스전에서 2004년 4월 체결된 생산물공유협정에 따라 2005년 8월 가스 생산을 개시하였다. 협정기간은 13년이며 Gazprom 사는 향후 2년간 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미화 1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azprom사와 Uzbekneftegaz사는 2005년 말까지 1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며 생산물공유협정에 따라 생산되는 천연가스 전량이 수출될 예정이다. Gazprom사는 2005년 말 우즈베키스탄의 Ustyurt 지역의 가스개발을 위한 또 다른 생산물 공유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45년으로 연간 천연 가스 생산량은 50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석유 메이저인 Lukoil사가 우즈베키스탄 국영 석유공사인 Uzbekneftegaz사는 대규모 우즈베크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생산물공유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Uzbekneftegaz사는 말레이시아의 Petronas 등 다른 석유 메이저들과 생산물 공유 협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물공유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관련 법령은 2001년 12월 7일에 제정된 법령이 있으며 생산물공유협정의 체결, 시행 및 종료 전반의 관계에 대해 통제하고 있음.

생산물공유협정은 주로 광물 자원의 생산에 적용되는데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 및 채굴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음.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이 외국업체와 체결한 주요 생산물공유협정은 다음과 같음.

먼저 러시아 석유 메이저인 Lukoil사가 우즈베키스탄 국영 석유공사인 Uzbekneftegaz사와 대규모 우즈베크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미화 10억불 상당의 생산물공유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차 협정은 2001년 7월에 체결되었으나 이후 우즈베크 관련 법규의 변경을 기다리느라 지금까지 잠정 중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이전 생산물공유협정 관련 법규는 투자자에 대해 거의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았는데 2005년 10월 변경된 바 있음. 우즈베키스탄 남부 가스전 집단에 대한 계약은 지금까지 체결된 생산물공유협정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함.

러시아의 가스회사인 Gazprom사가 우즈베키스탄의 Shakhpakhty 가스전에서 2004년 4월 체결된 생산물공유협정에 따라 2005년 8월 가스를 생산 개시함. 협정기간은 13년이며 Gazprom사는 향후 2년간 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미화 1천5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짐. Gazprom사와 Uzbekneftegaz사는 2005년 말까지 1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며 생산물공유협정에 따라 생산되는 천연가스 전량이 수출될 예정임. Gaz

prom사는 2005년 말 우즈베키스탄의 Ustyurt지역의 가스개발을 위한 또다른 생산물 공유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45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연간 천연 가스 생산량은 50억 입방미터로 전망됨.

이외에도 Uzbekneftegaz사는 다양한 생산물공유협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나. 경제자유지역(FEZ)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자유지역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나,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다. 법인 설립

1) 법인 종류 및 특성

외국기업은 우즈베키스탄 내에 대표 사무소나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대표 사무소는 외국 법인의 부속 기관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개인이 관리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지사는 외국 법인의 부속기관으로 영업활동을 포함하여 외국 모기업의 활동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지사는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립되며 최소자본금 등 외국 자본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립 가능한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추가 책임회사, 일반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기업연합 혹은 협회 그리고 개인 기업 등이 있다.

2) 주식회사(JSC: Joint Stock Company)

□ 정의

주식회사란 주주가 주식의 액면가치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로 보유 주식 대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못한 주주는 미납 주식 가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의 의무에 대한 각종 책임을 지게 된다. 주식회사는 폐쇄 혹은 개방 형태일 수 있으며 개방형태의 경우 최소 주주 숫자에 제한이 없으나 폐쇄형태일 경우 최소 3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여타 주주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개방형태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법에 따라 주식 공개 매각을 통하여 자유롭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회사 정관 혹은 주식회사 법에 따라 폐쇄 매각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폐쇄 매각을 할 수도 있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식은 설립자들 상호간에 한하여 혹은 사전 결정된 사람들에 한하여 배분될 수 있으며 전체 주주 숫자는 50명을 넘지 못한다. 전체 주주 숫자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공개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는 제한되며 증시에 상장될 수 없고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 양도를 원할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다른 기존 주주 혹은 법인 자체에 대해서만 매각이 가능하다.

□ 설립 자본금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주주들이 매입한 주식의 액면 가격으로 결정되며 모든 주식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우선주 액면 가격은 전체 설립 자본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최소설립 자본금은 미화 5만불 상당(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고시 환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화폐로 산정) 이상이어야 하며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의 200배 이상이어야 한다. 2005년 10월 1일 기준 월 최저임금은 9,400숨(미화 약 8.2불)로 나타나고 있는데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 기준 변화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액면 가격 인하 혹은 발행 주식 감소 등을 통하여 감소되거나 주식 액면 가격 인상 혹은 발행 주식 증가 등을 통하여 증가될 수 있다.

□ 주식

주식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혹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우선주 혹은 보통주 형태로 발행될 수 있고 최저 액면 가액은 100숨이다.

우선주는 우선주 보유 주주가 주식회사법에 명시된 대로 이익 배당금 혹은 기타 권리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폐쇄형태 주식회사는 기명 주식만 발행 가능하다.

주주는 주식회사 등록 후 1년 이내에 주식 대금을 완전히 납입하여야 하며 주식 대금 납입은 현금, 유가 증권 그리고 기타 자산 혹은 재산권 형태로 가능하다. 주식회사 자체가 매입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 배당금도 받지 못하고 매입 1년 이내에 재 매각되지 않을 경우 소각되어 그만큼 납입 자본금이 감소되어야 한다.

주식 배분 형태 및 기준은 회사 정관에 명시된다. 주식은 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되어야 하며 회사 설립 당시에는 액면가로 매각된다. 주식회사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거나 주주총회 의결 내용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모든 주주들은 주주명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총 발행 주식, 액면가, 주주 보유 등록 증권 형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주주총회(GMS: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 기구는 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는 연 1회 개최되며 연례 총회 이외의 회의는 비상회의로 간주된다.

회사 경영, 영업 정책, 회사 구조, 재무 상태, 이사진 선임 및 기타 문제들과 관련된 우선 순위가 높은 안건들은 주식회사 법 및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두 주주총회의 의결권한에 속한다.

주주총회 고유 권한 범위 내 대부분의 의사 결정권한은 주주총회 이외의 다른 의결 형태로 위임될 수 없다.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단순 과반수(50% 이상)로 결정되며 주식회사 법에 명시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75%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총회 참석 의결권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60% 이상이면 유효하다. 주주총회 참석은 주주가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가능하며 모든 주주는 언제나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직접 참석이 가능하다.

□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감독이사회는 주식회사 법 및 회사설립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한 문제들을 제외한 주식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 결정권한을 행사한다. 의결주식 보유 주주가 30명 이하인 경우 회사 정관에서 감독이사회 기능을 주주총회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 개최 결정에 대한 고유권한을 보유한 회사 내의 특정인 혹은 특정 기구를 회사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감독이사회는 주로 시행, 준비, 금융 및 증시 정책, 감독 및 구조 기능 등 주주총회에서보다 낮은 우선 순위의 의제들을 취급한다. 감독이사회 및 의장 선임, 감독이사회 소집 및 개최 그리고 기타 감독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은 회사설립 정관 혹은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 경영진(Executive Body)

경영진은 최고경영자(CEO) 혹은 집단경영의 경우 최고경영진을 통하여 회사의 일상 활동을 관장하며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진은 주주총회나 감독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 혹은 회사정관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그들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된다.

□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감사위원회 및/혹은 외부감사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감독하며 그 기능은 주식회사 법 및 회사정관에 따라 통제된다. 감사위원회의 활동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규정에 명시된다.

감사위원회는 자체 주도하에 혹은 주주총회나 감독이사회 결정 혹은 의결권 10% 이상 보유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시행한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감독이사회 이사를 겸임하지 못하며 주식회사 내 다른 어떠한 지위도 보유할 수 없다. 감독이사회 이사 보유 혹은 주식회사 경영진 보유 주식은 감사위원회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 연간경영실적보고서 및 재무제표 감사 및 승인을 위해 회사 혹은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감사가 선정되어야 한다.

3)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정의

유한회사는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회사 설립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나누어 설립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인 혹은 2개 이상의 법인들이 유한회사의 설립 문서가 설립 동의 및 회사 정관이 된다. 1인이 설립할 경우 설립 문서는 바로 회사 정관이 된다.

유한회사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경영활동 관련 위험에 대하여 납입 자본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납입해야 할 자본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않은 설립 참가자들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회사의 책임은 보유자산에 국한된다.

□ 자본금

유한회사 설립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등록 시점에서 납입 신고 자본금의 30%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 증명은 은행 발행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고 잔여 납입 자본금은 1년 이내에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 설립 문서에 명시된 경우에 따라 회사 최고 기구가 승인한 납입 자본금의 변화 및 설립 참가자들의 추가 자본 납입은 회사 납입 자본금에 대한 설립 참가자들의 보유 지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

□ 설립참가자 총회(GMP: General Meeting of Participants)

유한회사의 최고 경영기구는 설립참가자 총회(이하 “GMP”라 약칭)이다. GMP는 우즈베키스탄 유한회사법에서 최고경영기구의 기능이라고 명시한 특정 사안들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GMP의 고유권한은 주로 회사의 영업, 재정, 경영 및 구조적 사안들에 대해 망라하며 GMP는 최소 연 1회 이상 소집된다.

의결권 10%를 보유한 설립 참가자 들은 언제라도 비상 GMP 소집 요구 권한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안들은 회의 참석자들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되며 회사의 주요 방향 및 영업 정책 혹은 다른 법인에 대한 경영참가 등과 같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66%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회사 정관 개정 및 납입 자본금 증감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

유한회사는 최고경영자(CEO) 혹은 최고경영진이 회사의 경영 일상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GMP에서 선임되며 최고경영진 권한에 대해서는 최초 설립 문서에 명시된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감독이사회 설립 의무가 없으나 회사 설립문서에 감독이사회 설립을 명시하여 설립이 가능하다. 유한회사는 유가증권으로의 주식 발행이 금지된다.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혹은 감사)는 유한회사 최고 경영자 혹은 최고 경영진 활동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감독이사회가 있을 경우 이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유한회사는 정관에 회사 및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감사 지정을 명시할 수 있다. 15인 이상이 설립한 유한회사는 감사위원회(감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 이사회가 존재할 경우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유한회사의 감사(혹은 감사위원)로 선임될 수 없다. 감사위원들은 보통 GMP 참석자들 중 선임되나 회사 혹은 설립 참가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도 유한회사의 감사(혹은 감사위원)로 선임될 수 있다. 감사위원 수는 회사 정관에 명시된다. 감사위원은 보통 유한회사의 연간 경영실적 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확인, GMP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 또한 연간경영실적보고서 및 재무제표 감사 및 승인은 회사 혹은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감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 추가 책임회사(ALC: Additional Liability Company)

추가 책임회사는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설립하는 회사로 납입자본금을 설립자들 간에 분배, 회사 설립 문서에 명시한다.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추가 책임회사 또한 유가증권 형태의 주식 발행이 금지되며 회사 설립 문서 또한 유한회사와 동일하다.

추가 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기구 구조가 동일하나 주된 차이점은 설립 참가자들의 책임 범위로 납입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추가 책임회사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회사와는 달리 추가 책임회사의 설립문서에는 설립 참가자들이 납입자본금의 몇 배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 범위는 모든 설립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배수가 적용된다. 만약 설립 참가인들 중 1인(혹은 1개 법인)이 회사 경영 책임으로 파산하게 되면 설립 문서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나머지 설립 참가자들이 자본금 납입 비율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나누어 지게 된다.

4) 합자회사(Partnerships)

□ 일반 합자회사(GBP: General Business Partnerships)

일반 합자회사는 회사 설립 참가자들이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 유한 합자회사(LBP: Limited Business Partnerships)

유한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설립 참가자들이 설립하는 회사로 자본금을 납입하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납입한 자본금에 한해 책임을 지는 참가자들과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하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설립 참가자들도 구성된다. 유한책임 참가자와 무한책임 참가자는 구분되며 경할 수 없다. 즉 유한책임 참가자가 무한책임 참가자로서의 추가 자본 납입은 금지된다.

□ 납입자본금 및 설립문서

합자회사는 창업 합의 문서가 곧 회사 설립 문서가 된다. 납입 자본금은 최소 월 최저 임금의 50배 이상이어야 한다.

□ 설립 참가자들의 권리

합자회사 회사 설립 참가자들은 회사 창업 합의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파트너십을 탈퇴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탈퇴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합자회사의 경영은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립참가자들만 참가할 수 있다.

5) 개인회사(Private Enterprises)

□ 정의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인회사제도는 2003년 “개인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개인회사는 개인이 단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를 말하며 설립자가 회사 정관을 승인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립자는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회사 자산 범위 이외의

추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이 설립한 개인회사는 외국자본이 설립한 여타 형태의 회사들에 대해 부여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 납입 자본금 및 기업 경영

개인회사는 납입자본금 및 기업 경영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설립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현금, 유가 증권 혹은 기타 자산 형태로 가능하다. 개인회사는 설립자가 소유자로 경영을 직접 하게 된다.

라. 법인 등록 절차

1) 납입 자본금 요건

외국인 소유 법인 등록의 등록 절차는 납입 자본금 규모가 미화 15만불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각각 상이하다.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이상인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자본참여기업(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pation)으로 간주되어 기업 소재지 지방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의 경우 1인 이상의 외국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외국자본참여기업(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pation)으로 간주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기업 설립의 정부기관 등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2003년 “기업의 정부기관 등록, 기록 및 허가 발급 절차 관련 규정”을 승인했다. 이 규정에는 외국인자본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통일된 등록 서류 체크리스트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은 기업 등록과 동시에 등록기관이 등록 후 대부분의 조치를 취할 때 준수해야 하는 등록 개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등록 기관은 기업 등록 시 다음 등록 내용을 다루게 된다.

- 납세 및 통계 관련 기관에 대한 등록
- 연금, 고용, 사회 보장 및 도로 기금에 대한 등록
- 내무부 혹은 내무부 관련 부서로부터의 회사 인장 및 철인 사용 허가 취득
- 기타 기업 활동 관련 필요한 허가(토지 등록, 거주 공간의 사무 공간으로의 편입 재등록 등)

2) 법인 등록

(자본금의 초기 납입금이 지적재산권 기여 형태의 경우) 자본금에 포함될 납입 대상 지적재산권 평가액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과학기술위원회 의견서: 외국인 투자 기업(EWFI)의 경우 예치금이 미화 45천불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자본참여기업(CWFP)의 경우 외국자본 지분이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내기업의 경우와 같이 기업설립 최소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 정부기관 등록수수료 납부 영수증
- 합작투자기업과 그 지사 혹은 자회사는 월 최저임금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과 미화 500불을 납부.
 - 100% 외국인 소유 기업과 그 지사 혹은 자회사는 미화 2천불을 납부함.
 - 이 금액은 납부 시점의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고시 환율에 따른 우즈베크 솜화로 납부되어야 하며 공식 환율 확인 영수증도 함께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외국기업의 경우 해당국 기업 등록 요약본 및 주거래은행이 발급한 “양호한 신용 상태”에 대한 서신
 - 해당국에서 공증된 후 해당 지역 주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영사과에서 인증되어야 함(해당국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주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 외무부와 우즈베키스탄 주재 해당국 대사관에서 확인된 후 우즈베키스탄 외무부 영사부에서 추가 인증되어야 함)
- 관련 통계국에서 발급한 회사명 등록 증서
- 회사 인장 및 철인 스케치 3부
- 외국기업 사무소 주소를 확인하는 임대주 서신 혹은 부동산 소유 증명

등록기관의 제출 서류 심사 등 모든 적법성 심사 및 기업의 정부기관 등록(등록 후 절차 포함)은 등록 서류 제출 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내지 1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등록기관은 기업 설립 문서(회사 정관 혹은 창업 합의서)를 등록한 후 등록 확인서와 기업 설립 문서 등록 원본에 서명, 봉인한 후 “등록 후 절차 확인 문서”와 함께 해당 기업에 준다. 기업은 등록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등록한 후 법인으로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기업 존재를 인정받는다. 기업의 공식 주소가 바뀔 경우 해당 기업은 10일 이내에 등록기관, 세무서 및 통계국에 주소 변경 통보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기업 설립 문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경우 해당 기업은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 설립 문서가 수정된 경우 해당 기업은 1주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모든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초기 등록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재등록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나 기업 설립 문서가 변경 혹은 수정되더라도 납세 등록 및 정부 등록 번호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 등록비용의 50%에 해당되는 재등록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기업 공식 주소 변경 시에는 재등록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마. 투자방식

우선 단순 거래 위주의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우즈베크 현지인들의 상술도 뛰어나지만 정부가 거래 전업의 회사는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레이딩만 하던 거의 대부분의 터키계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축출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순수 트레이딩 회사인 Holland Jahn International사 또한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다가 결국 쫓겨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 자국 이외에서는 구할 수 없거나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원자재 혹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자재나 노하우를 투자 기업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즈베크 측 합작 파트너는 스스로 독자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작파트너를 축출할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UzBAT사가 그러한 경우로 우즈베크 측 파트너는 외국 파트너 없이도 독자적으로 담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투자 프로젝트가 건설할수록 그리고 이윤을 많이 남길수록 우즈베크 측은 외국 파트너를 축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여 파산하게 하는 등 몇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보통 외국인 합작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2-3년간 이윤을 남길 여유를 우즈베크 측에서 제공하며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 파트너를 축출하기 위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인 등록의 경우 납입 자본금 요건을 살펴 보면 외국인 소유 법인을 등록할 때 납입 자본금 규모가 미화 15만불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각각 상이하다.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이상인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되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자본금이 미화 15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자본참여기업(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pation)으로 간주되어 기업 소재지 지방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의 경우 1인 이상의 외국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하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외국인자본참여기업(CWFP: Company with Foreign Participation)으로 간주된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진출, 유치 통계

(단위: US\$백만, 건수)

구 분	누계(2007 년)	
	건수	금액
우리나라 진출	96	375
우리나라 유치	-	-

자료: 수출입은행

4. 노무관리

가. 노동법 개관

우즈베키스탄 국민 및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 내 고용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의 적용을 받음. 노사 관계는 단체 협약 및 개별 고용계약서에 따르며 고용 계약서는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규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모든 국내외 기업들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음.

나. 노동 관련 규정

○ 근로기록부

-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은 고용주에게 개인 인적사항 및 과거,현재의 근로기록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록부(Work Books)를 제출하여야 함. 이 근로기록부는 종업원의 일시적 질병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해 국가사회보장기금에서 지불되는 금액을 산정함과 아울러 종업원의 국가연금 권리를 결정하기 위해 발급됨. 종업원의 근로기록부가 없을 경우 고용주는 고용 개시 5일 이내에 신규 근로기록부를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함

다. 수습 기간

고용 계약서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포함될 수 있음

라. 최저 임금

임금은 정부가 정하여 고시한 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함. 2008년 9월 기준 월 최저임금은 25,040숨(미화 약 18달러)

마. 주당 근무 시간

통상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임. 종업원의 동의 시 시간외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나 일부 특정범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음.

시간외 초과근무는 2일간 4시간 혹은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은 정규 급여의 200% 이상이어야 함

바. 휴가

우즈베키스탄의 공휴일은 연간 9일임. 연간 유급 휴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15일 이상임

사. 병가

종업원의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한 일시적 결근에 대해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아. 출산휴가

출산 유급휴가는 출산 이전 최소 70일 이상, 출산 후 56일 이상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상 부여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종업원의 정규 급여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불되나 고용주가 국가 사회 보장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기부금에서 공제되는 형식으로 실제로는 모두 고용주에게 환불 되는 것이다.

자. 고용 비용

조세 제도 → 개인소득세 → 사회보장세 의무 납부 항목 참조

차. 우즈베키스탄의 외국 근로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이민 담당청(Agency on Foreign Labor Migration Issues)”에서 외국인 노동 면허를 취득해야 함. 외국인 노동 면허를 취득한 기업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별로 이 관청에서 별도의 노동 허가(확인)를 발급 받아야 함.

외국인 근로이민 담당청은 모든 필요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 면허를 발급 하도록 되어 있음. 외국인 근로자 개인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 절차는 외국인 근로 면허 발급 절차와 유사함. 외국인 근로 면허 및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 모두 유효 기간은 1년 이내임. 외국인 근로 면허 발급 수수료는 월 최저 임금의 10배이며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는 무료로 발급됨.

외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내 대표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 면허 및 외국인 노동 허가 모두 필요치 않으나 대외경제관계부에서 별도의 개인별 인증 카드(accreditation card)를 발급받아야 함.

5. 조세제도

가. 세제 개관

우즈베키스탄 세제를 규정하는 주요 법률은 조세법(The Tax Code)으로 1998 년 1 월 1 일자로 발효되어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2008 년 1 월부터 신조세법(New Tax Code)이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세
 - 법인(소득)세 (corporate tax)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소비세 (excise tax)
 - 자원개발세(subsoil use tax)
 - 수자원 사용세(Water use tax)
 - 도로 기금 납입(road tax)
 - 교육세(school tax)
- 지방세 및 기부금
 - 재산세 (property tax)
 - 토지세 (land tax)
 - 기타 세금 및 기부금

우즈베키스탄 세제를 규정하는 주요 법률은 조세법(The Tax Code)으로 1998년1월1일부터 발효되어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국세
 - 기업이윤(소득)세
 - 개인소득세
 - 부가가치세
 - 소비세
 - 속흙사용세(Subsoil use tax)
 - 환경세
 - 수자원사용세(Water use tax)
- 지방세
 - 재산세
 - 토지세
 - 기타 세금 및 기부금

나. 세제별 규정

1) 기업이윤(소득)세

□ 납세자 지위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립되었거나 등록된 법인(그리고 외국 등록 기업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주요 사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법인)은 과세 대상 우즈베키스탄 거주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활동하는 비거주 법인은 고정사업장과 연계된 우즈베키스탄 내 소득원에 대해 이윤세를 납부하며 이때 이러한 이윤과 관련하여 조세법에 규정된 공제액을 빼고 세금이 부과된다.

고정사업장과 연계되지 않은 비거주법인의 이익은 소득원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다면 총수입에 따라 공제액 없이 소득원에 대해 과세된다.

□ 적용 세율

2007 년에 적용되는 일반 법인세율은 10%이다.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서 다음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 상품, 용역 혹은 서비스 전체 판매량의 30% 또는 그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에 이윤세 50% 감면
- 상품, 용역 혹은 서비스 전체 판매량의 15%에서 30%를 수출하는 회사에 이윤세 30% 감면

우즈베키스탄 비거주 법인 고정사업장의 과실 송금은 10% 과세 대상이 된다.

□ 통합세(Unified Tax)

2005 년 6 월 20 일자 대통령령에 의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통합세를 도입하였다. 이윤세, 연금, 도로 및 학교 기금 납입, 정부로부터의 토지 임대료/리스료 등을 통합하여 단일 지급하는 통합세가 도입되었다.

2008 년 1 월부터는 소규모기업(micro firms) 및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세를 10%에서 8%로 인하하였다.

통합세 적용대상법인은

- 중소기업(알코올 생산업자, 통합토지세 및 고정 세액 납부자, PSA 참여자 제외)
- 민간 공중사무소
- 복권 및 게임관련 법인
- 콘서트 등 이벤트 기획사
- 농산물 생산업체(통합토지세율적용 기업 제외)

업종별 통합세율

(단위: %)

구 분	세 율
일반(중소기업)	8
민간 공중사무소	50
콘서트 등 이벤트 기획사	30
농산물 생산업체(통합토지세율적용기업제외)	6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립되었거나 등록된 법인(그리고 외국 등록기업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주요 사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법인)은 과세 대상 우즈베키스탄 거주자로 간주됨.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됨.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된 상설 법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 법인은 지사 영업행위 결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이때 조세법에 규정된 공제액을 제외한 만큼 세금이 인하여 부과됨. 비거주법인의 우즈베키스탄 상설 법인 영업 행위와 관련 없는 이윤에 대해서는 이윤 발생원이 우즈베키스탄일 경우 공제액 없이 세금이 부과됨.

□ 적용 세율

- 2005년 기준 일반 이윤세율은 10%임.
-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혜세율이 적용됨.
 - 아동용 및 여성용 위생용품 그리고 예술 제품 공예품 생산 전문화 기업에 대해 이윤세율의 10% 감면 적용
 - 전체 생산제품 혹은 서비스의 30%이상 수출 시 이윤세율 50% 감면
 - 전체 생산제품 혹은 서비스의 15~30% 수출 시 이윤세율 30% 감면
- 우즈베키스탄 비거주 법인의 우즈베키스탄 상설 법인 이윤 과실 송금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됨.
- 중소기업의 경우 200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아 이전까지 단일세, 예산외연금, 도로 기금 및 학교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납부토록 하던 것을 단일세 한 가지만 매 분기별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됨.

- 중소기업들에 대한 단일세율은 13%로 정해졌으며 농산물 생산업체들에 대해서는 6%, 콘서트 기획업체들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공증사무소에 대해서는 50%의 별도 단일세가 적용됨
- 이와 함께 새로 창업되는 중소기업들은 창업 후 1년간은 세금 납부가 유예되며 이 기간 중의 세금은 다음 해 1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됨

□ 원천징수세

우즈베키스탄 상설 법인의 영업 행위와 무관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됨.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우즈베키스탄 국내 혹은 국외에서 지불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며 공제액 없이 소득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됨.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조세법에는 우즈베키스탄 발생 소득이 우즈베키스탄 국내 영업활동에만 관련된 것인지 혹은 우즈베키스탄 국외 영업활동에 관련된 것이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불된 소득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상반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원천징수세율

소득원	원천징수세율
배당금 및 이자	15%
보험료	10%
통신 및 운송 활동	6%
로열티, 임대료, 관리 서비스/컨설팅 수수료 그리고 기 과세된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발생한 소득	20%

주: 원천징수세율은 적용 가능한 국제조약에 따라 인하될 수 있음

□ 과세 대상 근거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할 때 전체 매출액(상품, 서비스 및 기타 소득)에서 비용 및 기타 매출 발생을 위해 지출된 지출을 공제하게 되며 다음 비용들 또한 공제됨.

- 부가가치세 공제액, 소비세, 재산세, 토지세, 숙박사용세, 환경세, 수자원사용세 및 관세
- 단기은행대출 및 여타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이자 지불액. 단 각종 벌과금 제외
- 종업원 급여 지출(은행, 보험회사, 비디오/오디오, 경매, 카지노, 비정부 기구 발행 복권, 콘서트 연주 등에 대한 지출 제외)
- 과세 대상 소득 산출시 공제에서 제외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
 - 법정 한도 초과 광고비, 연예비 및 출장비
 - 비은행 대출 이자, 은행 장기 대출 이자 그리고 모든 연체 이자
 - 체포되지 않은 범법자의 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실과 기타 지출

□ 공제

다음 지출은 세금 산출 시 공제됨.

- 환경 및 자선 기금에 대한 기부 - 과세 대상 소득의 1% 이내
- 생산 개발, 확대 및 재건 비용 - 과세 대상 소득의 30% 이내
- 고정 자산 및 유가 증권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
 - 3년 이상의 영업 활동에 사용된 고정 자산 매각 손실은 총소득에서 공제됨. 유가증권 매각 손실을 총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음

□ 감가상각

소득세 산출 시 적용되는 최대 감가상각률

고정 자산 그룹	감가상각율
자동차, 도로상 사용 목적의 엔진부착 트랙터, 특수 공구, 재고, 악세서리,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장비	20%
트럭, 버스, 특장차 및 트레일러, 기계류, 공업설비, 단조 및 압연 기계, 건설 및 농업기계/설비 및 사무용 가구	15%
철도, 해상, 하상 및 항공 운송, 발전 및 난방 기기, 전기 및 터빈 기기, 송전 및 통신 기기, 파이프라인	8%
건물, 건축 및 구조물	5%
기타 감가 상각 가능 자산	10%

□ 납세 신고 및 납부

납세를 위한 회계연도는 캘린더 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용함. 법인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차년도 2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재무제표와 함께 납세 신고를 해야 함. 우즈베키스탄 내 비거주 법인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표사무소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은 차년도 3월 25일까지 세금 환급 신고를 하여야 함

2) 개인소득세

□ 납세자 지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시작시점에 관계없이 12개월 내에 183일 이상 실제로 거주한 개인은 과세 대상 거주인(resident)으로 간주됨. 거주 납세자는 우즈베키스탄 국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소득원이 우즈베키스탄 국내일 경우에 한해 세금을 납부하게 됨.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혜택이 시장 가격에 근거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됨. 우즈베키스탄 소득세법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모든 추가 지불액(생활비 수당, 특수지 수당, 자녀 교육비, 전지 휴가비 등)을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음.

각종 혜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명확하게 제외되어 있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과세 대상이 됨.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그 중에서도 특히 별거수당, 퇴직금 및 연금소득 등임. 거주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출장비, 주택임차료 및 회사차 운영비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세율

2005년 1월 1일부터 최고 소득세율은 30%로 정해짐. 2005년 초부터 누적연금제도법이 발효됨에 따라 소득의 1%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이 금액이 종업원의 누적 연금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고용 계약을 맺은 고용주 및 종업원은 누적 연금 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법인 지위가 없는 개인 자영업자 및 농부는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과세 대상 소득	세율
최저임금의 5배 이상	13%
최저임금 5배+1숨 이상 10배 이하	21%
최저임금 10배+1숨 이상	30%

- 최저임금은 주기적으로 변경되며 과세대상 소득기준도 이에 따라 변경됨을 유의해야 함. 2008년 4월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865숨임.
- 특별히 힘들고 위험한 조건의 근로를 포함하는 종업원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 사회 보장세 의무 납부

2005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들은 31%의 단일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 사회 보장세는 다음과 같이 할당됨

사회보장 기금 종류	할당 비율
연금 기금	종업원 총소득의 30%(해당 기업 매출액의 0.7% 추가)
고용 기금	0.5%
노동조합연합회	0.5%(대표사무소 제외)

- 종업원의 연금 기금 납부액은 급여의 2.5%로 정해져 있음
-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고용된 외국인은 연금 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출신국가의 의무 납부 사회보장기금은 과세 공제 대상이 됨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주 소득원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거주 개인은 추가 소득원이 우즈베키스탄 국내외를 막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차년도 4월 1일까지 자신의 거주지 소재 세무서에 연간 총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 회계연도에 주 소득원 이외의 추가 소득이 없는 개인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예상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회계연도 이내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고 출국할 경우 출국 1개월 이전에 실제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영업활동을 영위한 개인은 소득 및 지출신고서를 소득 발생일로부터 1개월 종료 5일 이내에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후 차년도 1월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함

다. 기타 국세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 판매, 수입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20%의 세율이 적용됨. 수출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설명됨

2) 소비세

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 구분 및 적용 세율은 내각에서 결정한다. 재화, 용역, 서비스의 수출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재화, 용역,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수출을 목적으로 판매된 상품은 소비세가 면제되는데, 단 내각에서 정한 품목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출품목은 매우 적으며, 수입품의 경우 대부분 국내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되는 상품과 동일한 외국상품 수입 시에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우즈베크 정부는 2008 년도부터 수출상품의 소비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였으며,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대상품목을 늘리고 기존 소비세 대상품목의 세율도 인상하였다.

- 천연가스의 소비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고, 가구, 크리스탈 그릇, 비디오 및 오디오제품 등의 소비세를 폐지함.
- 수입 시 신규 소비세가 신규로 부과되는 품목은 쇠고기(20%), 계란(20%), 사과, 배 (100%), 아이스크림(200%), 무설탕껌(70%), 대리석(20%), PE 백(20%), 플라스틱제 부엌용품(20%), 조화(70%), 스틸와이어(40%), 볼펜 및 연필(15%)등 70 여 개 품목에 달함.
- 수입 시 소비세율이 인상된 품목들은 치즈(10%→50%), 물(70%→100%), 의류 (10%→30%), 세라믹타일(20%→50%), 귀금속(90%→ 140%), 가구(30% →50%), 담배 (1 천 개피당 \$7→\$10) 등 20 여 개에 이르고 있음.

3) 자원개발세(Subsurface use tax)

자원개발세는 자원개발 등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과세대상이다.

사업 내용	과세 기준	세 율
천연자원과 부산물 채굴	채굴량	천연가스: 30%, 보석: 24% 원유: 20%, 금: 5%, 은: 8%
천연자원 채굴 시 얻은 부산물의 사용	채굴량	추출된 주요 천연자원에 적합한 세율의 30%

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 구분 및 적용 세율은 내각에서 결정됨. 소비세는 재화 및 용역의 수출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으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동일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과됨. 수출입 소비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됨.

4) 속흙사용세(Subsoil use tax)

속흙 사용세율은 내각에서 결정되며 심토 종류에 따라 상이함.

5) 환경세

환경세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비용의 1%가 부과되며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 법인이 과세 대상이 됨.

6) 수자원사용세(Water use tax)

수자원사용세율은 내각에서 결정하며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정에서 수자원을 사용하는 법인이 과세 대상이 됨.

라. 지방세 및 기부금

법인 및 개인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많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소함.

1) 재산세

기업 재산세율은 3.5%로 모든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이 과세 대상임. 수출위주 법인은 다음과 같은 우대재산세율을 적용 받음.

- 총 매출액의 30% 이상을 수출할 경우 재산세 50% 감면
- 총 매출액의 15% 이상 30% 미만 수출의 경우 재산세 30% 감면

외국법인의 우즈베키스탄 대표사무소 재산은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개인 소유 재산세율은 내각에서 별도로 결정됨

2) 토지세

토지세는 내각에서 결정한 고정세율로 부과됨

3) 기타 세금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각 주 지방 정부 그리고 타슈켄트 시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부과금 및 수수료의 한계 세율은 다음과 같음.

세금 종류	한계 세율
취발유 및 경유세	리터당 50숨
가스세	킬로그램당 50숨
사회간접자본개발세	기업 손익의 8%
증류주 및 담배 거래 면허 수수료	매월 최저임금의 5배
상거래 권리 부과금	매월 최저임금의 3.5배
법인 등록 및 기업활동 관련 개인 등록 부과금	월 최저임금의 5배

4) 벌과금

- 조세법을 위반할 경우
 - 소득(이윤)을 은닉할 경우 은닉 소득(이윤) 전체를 압류하고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
 - 세금환급신청서 미제출(혹은 지연 제출 혹은 불완전 신청서 제출)시 지연 1일당 환급 대상 세금의 1%. 이 벌과금은 총 환급세액의 10%에 한해 부과됨
 - 모든 형태의 무면허 행위에 대해 그러한 행위로부터 발생된 전체 소득액을 압류함과 아울러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
 -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지연 시 지연 1일당 납부액의 0.7% 벌금 부과
- 기한 내에 세무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
 - 세무 당국 신고 없이 30일까지 영위된 영업 활동에 대해 월 최저임금의 50배(단 소득의 10% 미만)를 부과
 - 세무 당국 신고 없이 31일 이상 영위된 영업 활동에 대해 월 최저임금의 100배(단 소득의 50% 미만)를 부과
- 납세자가 조세법을 여러 가지 위반할 경우 매 건별로 재정적 제재가 적용됨.

마. 이중과세 방지협정

2005년 1월 31일 기준 우즈베키스탄은 43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중 38개국에 대해 발효중임. 한국과는 1998년 2월 11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1998년 12월 25일부터 발효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 과세 공제 대상 되는 외국 법인 혹은 합작법인의 외국 당사자는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우즈베키스탄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영구 법인 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확인서는 세금 납부 이전 혹은 납세 기한 1년 이내에 제출하면 됨.

6.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환전 통제

우즈베키스탄 송화는 2003년 말부터 국제 금융 거래 시 완전 대환 화폐로 바뀌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합의 조항 8조 2(a), 3 및 4항에 명시된 의무를 수용하여 2003년 12월 15일부터 발효한다고 명확하게 IMF에 통보했다. IMF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IMF의 184 회원국들 중 그러한 의무를 수용한 157번째 국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무역에 따른 모든 통화 제한, 경화 가치 보유 귀중품(귀금속, 보석, 수표 등) 구입 및 매각, 이자 송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배당금 지불, 우즈베키스탄 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이익금 우즈베키스탄 국외 송금 그리고 기타 특정 환전 관련 등에 대한 제한조치들이 철폐되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IMF 8조 이행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비공식적인 외환 거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외 송금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송화를 외화로 환전하는 데에는 경화 부족 등 특정 행정적 어려움이 이러한 금융 자유화의 실제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는데 투자 과실금 송금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은 60일에서 180일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긴축 재정 및 금융 정책에 기인되는 것으로 여전히 대외 무역과 자본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외의 아무런 다른 합법적 대외 송금 방법이 없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이전의 수입 등록 제도를 철폐하고 대신 고율의 수입 관세 및 수시 국경 봉쇄 등을 시행하여 외국 투자기업들이 필요한 생산 원자재를 반입하는데 엄청난 지연이 발생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 법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국외은행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우즈베키스탄 통화 법에 명시된 바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화 지불 및 일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 국내의 모든 거래는 송화로 결제되어야 한다.

나. 환율 종류

우즈베키스탄 송화 환율은 세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정부환전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공식 환율이 있다. 두 번째로 환전 업무가 가능한 공인은행에서 사용하는 OTC(Over the Counter) 환전소 환율이 있다. 세 번째로 암시장 환율이 있으며 이는 불법이다. 2003년 말 환전소에서의 자유로운 환전 조치 및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을 일치화 이후 암시장 환전 규모는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음 2008년 7월10일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 공식 환율: US\$1=Soum1,310
- OTC 환율: US\$1=Soum1,311
 - 상업은행 달러매도환율: US\$1=Soum1,315.00
 - 상업은행 달러매입환율: US\$1=Soum1,312.00
- 암시장 환율: 상업은행환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

실제로 정부환전소 및 공인은행들만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외환(CIS 국가들 화폐 포함) 매도가 가능하다. 공식 환율은 정부환전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경매를 통하여 결정되며 이 환율은 세금 및 관세 납부 그리고 기타 공적인 목적(외국인투자기업 등록비 납부 혹은 비거주자 납세 등)에 사용된다.

OTC 환율은 2000년 7월 1일 도입되었으며 외화를 벌어드리는 수출회사가 정부방침에 의한 50%의 외환 강제 매각 시에 적용된다.

다. 현금 결제 제한

기업들 간의 거래 결제는 사업 형태에 관계없이 계좌이체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들의 소액 현금 보유 권리는 극도로 제한된다.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급여 지불 및 출장비 지불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인은행에서 급여의 현금 지급은 엄격히 통제된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설립된 기업들의 연간 급여는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나 외국인생산기업(PEWFIs)의 급여 수준은 우즈베키 정부가 국내기업만큼 엄격히 통제하지는 않으며 단지 최저임금기준만 적용을 받는다.

라. 경화 강제 매각

대부분이 기업들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수출 관련 상업 행위로 발생한 외환 소득의 50%를 수입 발생 후 5일 이내에 OTC 환율로 강제 매각해야 한다. 외환 소득의 강제 매각 시 운송, 보험, 관세, 수수료, 은행 대출 이자 그리고 수출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서비스 구매 비용 등은 제외된다. 수출 증가 혹은 과학기술장비 수출로 인한 외환소득 재투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외환 강제매각은 합작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지사를 포함, 모든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에 대해 적용되며 외환 강제매각 목적을 위해 법인계좌로 입금된 모든 수출 대금 외환 수입을 강제 매각 대상으로 간주한다.

납입자본금에서 외국자본이 50%를 차지하며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기업등록 시점으로부터 5년간 외환 수입의 강제 매각에서 제외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외환 자본 납입의 경우나 외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지사 계좌로 운영 경비로 전도되는 외환 또한 강제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외환으로 결제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거래로 발생하는 외환소득(비수출)과 같은 예외적 외환수입 또한 강제매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강제매각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특정 상황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접촉하여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권장된다.

마. 송화의 외환 환전

IMF 합의 조항 6조 3항에 허용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본계좌 거래까지 자유 환전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 자본이동거래라 불리는 그러한 거래에는 투자 지불(장단기 신용 포함), 대출 및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입/판매 등이 포함된다.

외환 환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거래은행이 먼저 환전 신청서를 내부 심사한 후 정부환전소에 환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전 신청서에는 정확한 외환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일반 용도로는 환전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다. 환전권은 사례별로 부여되나 환전 신청서 제출 이전에 기업의 거래은행은 환전 신청 건에 대한 자체 전문가 의견을 정부환전소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환전소의 환전 허가는 정부 외환보유고, 해당 목적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외환 수요 예상 그리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한 이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이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환전 권한이 부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한다.

바. 추가 제한 조치

1) 외환 매입 과징금

1999년 1월 8일부터 자유 환전이 가능한 외환 매입을 할 경우 5%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모든 법인 및 개인이 외환을 매입할 때 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나 정부예산으로 매입할 때, 정부지불보증하의 차관을 상환할 때, OTC 환율로 환전소에서 매입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되지 않는다.

과징금은 외환 매입을 위해 지불되는 송화에 대해 부과되어 송화로 징수되며 정부환전소 및 공인은행들은 외환 매도 시에 이 과징금을 징수한다. 이 과징금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통 1%의 은행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다.

2) 과실 송금에 대한 과세

우즈베키스탄 내에 항구적 기업을 설립한 외국 기업은 추가 과징금 납부를 인식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따르면 기업 이윤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이외에 비거주법인 (외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내 기업의 모든 국외 과실 송금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우즈베키스탄은 '07년 말 기준으로 인구 2,680만 명에 수입규모 \$52억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면에서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시장이지만 수입 규모 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직까지 사회주의적인 통제경제 체제를 운영하면서 외화의 유입금액에 따라 수입용 외화환전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시장특성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외화수입원은 면화, 금, 구리 등 1차 상품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97년부터 발생한 아시아 및 러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는 이들 1차 상품의 국제소요와 가격을 하락시켜 외화 유입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03년 들어 국제시세가 10~40% 가량 상승하면서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있다.

산업구조는 전형적인 1차 산업 위주로 발달해 있고 인구의 약 6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대부분은 국영농장 및 집단 농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민영부분이 약간 성장하여 전체생산의 1/4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 구리 등 천연자원의 채취를 위한 광업이 일부 발달해 있다.

한편 구소련시절 산업시설의 분산정책에 따라 설치된 비행기 생산공장, 농업용 기계 공장 등도 일부 가동 중에 있으나 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고 실제로 수입수요가 많은 소비재 경우는 생산기반이 거의 전무해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간 불균형 분포 문제이다.

소비재 부족에 따라 사재기식 구매가 횡행하고 있으며 '92년 독립 이후 시장경제 도입의 역사가 일천해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으나 '95년-'97년 중 상품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러한 관행이 줄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수입용 외화환전이 어렵고 환율이 상승하자 다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써 생활수준은 여타 구소련 공화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따라서 자동차, 가전제품의 보급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내구성 소비재들도 대부분 구소련산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다.

한편 '92년 독립 이후 자본 주의 제도의 도입 과정, 특히 국유 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부유층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극빈층과 부유층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중산층의 형성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은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투자 진출국으로 대우방적, 신동 등의 현지 합작진출 공장이 있다.

그러나 개별상품 특히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유럽이나 터키 제품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진출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국상품의 본격적인 수입역사가 일천하고 소비자의 일반적 구매력 취약으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대부분의 한국상품이 수출에 유망하다고 할 수 있고 현재 물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어떤 물건이건 현지화를 받고 판매하면 판매는 매우 원활한 편이다. 이중에서도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이 유망한 수출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통망은 아직도 국영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대부분이고 최근 들어 외국기업과 합작한 민간 도매 및 소매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많이 상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환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이들의 역할도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면서 한국상품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내륙국가로 물류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와 납기지연 등 비가격 경쟁력 저하로 작용한다.

2. 물가정보

□ 도시: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 환율: US\$1 = Soum1,3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1,000	7.1	구두(1켤레, 소가죽)	80
1.2	넥타이(1개, 실크100%)	75	7.2	치약(150g, 1개)	1.9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30	7.3	칫솔(1개)	2.5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1.2	7.4	면도기(질레트, Mach)	15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200	7.5	건전지(1세트, 1.5V AA)	3.0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5	7.6	화장지(1통, 300매)	3
1.7	청바지(Levi's)	90	7.7	비누(1개)	1.4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안심)	7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3.0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7	8.2	볼펜(12개)	13
2.3	닭고기(1KG, 생닭)	6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8
2.4	쌀(1KG,Short Grain)	2	8.4	공CD(1통, 12개입, 700MB)	5.5
2.5	밀가루(1KG)	1.5	8.5	휴대폰(범용형)	150
2.6	설탕(1KG, 백설탕)	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25.0
2.7	계란(10개)	1.5	8.7	인터넷가설비(1회 최초, 1회 설치)	45
2.8	감자(1KG, 현지산)	0.5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100
2.9	미네랄워터(1.5ℓ, 네슬레)	0.5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35,000
3.1	고추장(1Kg)	12	9.2	엔진오일(1L)	8
3.2	된장(1Kg)	8	9.3	휘발유(1L, 중급)	0.8
3.3	라면(1개)	1.5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50
3.4	설렁탕 류 (1인분, 설렁탕, 곰탕 등)	7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900
3.5	불고기(1인분, 200g)	6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6	10.1	지하철(1구간)	0.2
3.7	김치찌개(1인분)	6.5	10.2	시내버스(1구간)	0.2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0.4
4.1	햄버거(1개)	2.5	10.4	택시(추가요금/Km)	0.4
4.2	피자(1판)	9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5	11.1	전화개 통비(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14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2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3
4.5	담배(수입산, 1갑)	1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없음
4.6	위스키(1병, 750ml)	43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1
4.7	커피(1병, 125g)	9.5	11.5	국제전화(현지-서울,3분,평상)	4.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06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1,00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77.4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600	11.8	특급우편 (DHL, 1개, 250g, 현지-서울)	64.61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04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3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075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015
6.1	TV(29인치, 칼라, 범용)	530			
6.2	VTR(6헤드, 범용)	200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 콤보)	70			
6.4	전자레인지	110			
6.5	냉장고(600L급, 가정용)	100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870			

□ 도시: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 환율: US\$1 = Soum1,3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3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14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300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2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37.5%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3,0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5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5,2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26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6,500	18.6	연간국경일	9일
	13. 레저 · 오락		18.7	토요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80	18.8	노동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없음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17,0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20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500	19.1	법정최저자금	150,00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15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3,0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7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15%
	14. 의료 · 약품		19.4	외국인업체세제혜택(개인소득세)	15~30%
14.1	의료보험료(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1,50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24~30%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70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없음			
14.4	치과(스켈링, 1회)	12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0.5			
	15. 신문 · 방송 · 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2.5			
15.2	한국신문(1개월)	100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1.4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2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95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0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99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70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8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35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25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의 경우 직업별 전화번호부(Yellow Pages)를 활용하거나 현지 비즈니스 유력지인 “Prestige”에 광고 게재 등을 통하여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 주요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바이어 발굴을 의뢰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경제단체

- 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Uzbekistan)
 - 주소: 6, Bukhoro Street, Tashkent.
 - 전화: (998 71) 232- 0901 / 팩스: (998 71) 232- 0903
 - www.chamber.uz

- NBU
 - 주소: 101, Amir Temur str.
 - 전화: (998-71)233-6070/ 팩스: (998-71)233-3200
 - 세부정보: 국영은행

2) 투자관련 기관 연락처

-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vestment and Trade.
 - Address: Tashkent city, Taras Shevchenko str., 1.
 - Tel: (998 71) 238 50 00 / Fax: (998 71) 238 52 00
 - www.mfer.uz
 - Mr. Ganiev E.M. – Minister.
- UZINFOINVEST Agency
 - Address: Tashkent city, Taras Shevchenko str., 1.
 - Tel: (998 71) 238 91 00 / Fax: (998 71) 238 92 00
 - www.uzinfoinvest.uz
 - Mr. Irmatov B.M. – General Director.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 사항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의 70%가 회교도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오랜 지배영향으로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어 종교에 대한 금기사항은 중동지역 국가들에 비해 훨씬 적은 편으로 대부분이 회교도라는 사실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회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종교를 화제에 올릴 경우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교에 대한 대화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음주의 금지나 여성에 대한 금기사항도 중동지역처럼 엄하지는 않은 편이고 인구 중 10% 정도를 차지하는 러시아인들의 경우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 인들은 비교적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바 이들과 접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나. 수입 관행

수입 시 직접 통관상의 문제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계약 체결인데 모든 수출입 계약은 수출입 당사자간 계약체결 이후 대외경제부, 거래은행, 세관의 계약조항 전반에 걸쳐 다시 심사를 거치며 원칙적으로 동 심사단계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심사에 따른 문제점은 두 가지 심사완료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판매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물품을 일찍 선적하는 경우, 물품이 도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압수 당하는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수출 시 주의가 요망된다.

다. 상담 시 유의사항

우즈베키스탄 수입상들과의 상담 시 영어로는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러시아를 통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재국 통신사정이 낙후돼 있어 팩스교신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화와 팩스를 한 전화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어 팩스를 송신할 경우에도 먼저 전화로 팩스를 보낸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러시아어로 "팩스 빠잘스타!"(Fax please!)라고 하면 알아듣고 팩스로 라인을 전환하는데 신호음을 듣고 문서송신을 개시하면 된다. 한편 근무 외 시간에는 전화로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팩스 발송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인 통관회사가 없으므로 주로 바이어들이 통관을 추진하거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통관을 대행해주고 있으나 가끔 통관이 지체 되거나 불가하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관은 바이어가 추진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말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철저히 문서로 남겨두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바이어들 중에는 가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서명하도록 재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문서를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항구가 없으므로 CIF가격 조건으로 계약하는 대신 CIP조건(철도나 트럭으로 운반)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라.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일부 수입상들은 물물교환을 제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들 수입상들은 구리, 면화 등을 제시하기도 하며 실질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면화, 금, 구리, 면화, 금속 스크랩류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수출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마. 기타 비즈니스 관습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인근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전통적으로 솜씨 좋은 농업인들로 알려져 있으며 “우즈베크인들이 나무를 키우려면 땅에 나무 막대기만 꽂으면 된다”는 카작 속담이 있을 정도임. 우즈베크인들은 농업에 주로 종사하여 왔지만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살아 왔던 덕분에 장사술 또한 자연스럽게 이들 생활의 주요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음

우즈베크인들은 구소련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 이후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천성적으로 장사에 더 관심이 많아 제조업 육성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여 신속한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우즈베크인들은 상관습 특성상 흥정을 매우 좋아함. 이들은 흥정 없는 거래에는 별 만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흥정 자체를 즐기는 편인데 흥정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거래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일 경우도 있음

이들은 또한 약속 이행이 상당히 느린 편임. 특히 당장 이용가치는 없지만 버리기 싫은 거래 건에 대해 이러한 이행 지연이 심한 편으로 보통 최종 결정 지연작전을 구사함.

이러한 이행 지연은 더 이상 지연이 불가능 할 때까지 계속하며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야 거래 거부 혹은 면담 거절을 통보하곤 함. 이러한 경향은 거래 조건이 자신에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또 다른 거래선을 물색함에 따른 것으로 이행이 지연될 경우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이와 함께 관철은 기존 거래선이 있어도 새로운 거래선을 끊임없이 찾아 나섬. 거래선을 변경할 때에도 이익이 더 큰 것을 찾기 보다는 거래 상대방의 태도에 더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이들은 거래 계약서보다는 상대방의 태도 그리고 서류보다는 말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

5. 이주정책 가이드

가. 집 구하기

우즈베키스탄에도 다수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집을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편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사회주의 시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로서 규모가 작고, 치안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단독주택을 개조, 보수하여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이 가족을 동반하여 살만한 주택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가격도 3,000불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나. 자동차 구입

자동차 판매 전문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수도 타슈켄트에만 자동차 판매 전문점이 수십 군데 있으며 자동차 등록 및 모든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다. 이주행정절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근 CIS국가에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이주 이외에 외국인들의 공식적인 이민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 등은 따로 없다. 외국인들은 외교관, 투자기업의 임직원, 국제기구 및 NGO의 소속직원, 우즈베키스탄 정부초청의 경우가 아니면 장기체류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라. 구좌개설

외화구좌는 개설은 가능하지만 외화를 현금으로 예입하는 것은 외화를 정당하게 확보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이전에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외국인의 외환구좌에 있는 돈은 자유로운 인출이나 해외송금이 가능하지만 현금 인출 시에는 사후에 세무당국에서 환전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대로 시장환율로 환전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마. 생필품 조달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생필품 조달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의류와 의약품인데 가급적 한국에서 이삿짐 발송 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현지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항생제 등 상비약은 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바. 한국식품 조달여건

우즈베키스탄은 농업국가이고 현지에는 17만 명의 고려인들이 체류하여 두부, 콩나물을 비롯하여 육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경우에는 조달이 어렵지 않지만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해산물의 경우에는 조달이 어렵다. 그러나 서울과 타슈켄트를 오가는 아시아나 항공과 우즈베키스탄 항공이 일주일에 두 편씩 운항되고 있어 동 항공편을 통하여 필요한 생필품을 대부분 조달하고 있다.

사. 레저 여건

인근 CIS 국가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98.9월 개장한 Tashkent Lakeside Golf Club은 18홀의 정규 골프장으로 눈이 쌓이는 겨울 1-2달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중 이용 가능하다. 경치와 Lay out도 우수한 편이고 Green Fee는 \$80 수준이다. 한편 11월 중순부터 3월까지의 스키를 탈 수가 있는데 스키장 시설은 미비하지만 눈은 천연설이다. 수영, 테니스 등은 시내 곳곳에 체육시설에서 염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승마도 가능하다.

아. 치안 상태

우즈베키스탄은 경찰 국가라고 할 만큼 시내 도처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마피아가가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 치안상태는 대단히 양호한 편이다.

자. 전화신청

전화가설에 비용은 크게 들지 않지만 최근에 교환기가 도입, 종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중이나 아직까지 전화회선이 충분치 못한 탓에 디지털 라인의 가설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기다리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임차 주택에 전화를 포함하여 임차 계약을 체결하므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다.

차. 비품구입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가구류, 일반사무용품 등은 구입이 쉽지 않다. 이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군데서 구입이 어렵고 여러 곳의 상점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전반적으로 비싼 편이다.

카. 자녀 교육여건

○ Tashkent International School

- 위치: 타슈켄트 시내
- 전화번호: (998-71)191-9670/2
- 총 학생은 유치부부터 12학년까지 약 250명이며, 교사는 모두 영어 Native Speaker 이다.
- 입학비는 없으며 등록금도 꽤 높은 수준이다. 1-12학년까지 연 미\$12,000 - \$16,000임

○ Tashkent Ulugbek International School

- Address: Tashkent city, Usman Nosir str., 17
- E-mail: secondary@tasulu.com , primary@tasulu.com
- www.tasulu.com
- Education fee: from 1 to 7 classes: 6,000\$ annually / From 7 to 11 classes: 7,000\$ annually.

다. 병원

대부분의 병원은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무료로 진료되고 있지만 병원시설 및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들어서는 상당한 고가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클리닉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는 미미한 편이다.

한편 의사들의 봉급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의사들의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약품의 보급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기후가 건조해 전염병 등은 활발하지 않지만 위생상태가 낮아 감염 등은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들이 갈 만한 병원들은 다음과 같다.

- 친선 한방병원
 - 1996년 8월 한의사 협회가 타슈켄트에 의료봉사단으로 활동을 벌인 후 현지인들이 반응이 좋아 세워진 병원으로 국립 타쉬미 제1대학과 대한한 의사협회 해외봉사단이 자매결연을 맺고 1997년 6월 9일에 개업했다.
 - 위치: 스파리 타시미 내(정문을 지나 왼쪽으로)
 - 시간: 월-금(09:00-15:00)
 - 전화: 369-4407, 369-4331
- MDS Service
 - 응급환자 후송가능. 최신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병원.
 - 주소: 보트키나 거리 110
 - 전화: 169-7085(응급환자는 080)
- 회복 한방병원
 - 한국인 운영의 한방병원
 - 주소: 마시프 가라수4, 돔3(경찰대 후문 옆 500m)
 - 전화: (998-71)166-5268, 119-6523
- Tashkent International Medical clinic
 - 전화: (998-71) 191-0142

파. 참고: 관련법 및 정책

1) 자산 취득

- 관련 법규
 -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관련 법규는 1992년 12월 8일 채택된 우즈베키스탄 헌법, 1990년 10월 31일 발효된 우즈베키스탄 재산법(이후 개정) 그리고 1998년 4월 30일 입법화된 이후 개정된 토지법 등이 있음.
 - 부동산 소유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산을 소유, 사용 그리고 처분할 수 있고 소유물의 소유권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유권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토지, 심층토, 동산 및 부동산, 지적재산권, 현금 그리고 유가증권 등임

○ 토지 소유권 제한

-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를 소유(소유, 사용 및 처분 권리 등)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
- 법인과 개인(5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한 영주권 소지 외국인 포함)은 소규모 영업 및 서비스 설비(소규모 매장 등)가 있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음. 개인(내외국인 포함)은 또한 아파트 및 주택과 해당 아파트 및 주택 소재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음. 우즈베키스탄 국내인 그리고 특정 경우의 외국인은 개인 영농, 정원 가꾸기 그리고 별장 건축 등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음
- 토지법에서 외국인 법인을 포함한 법인이 토지 소유권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규모 혹은 대기업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은 내각 의결 혹은 대통령령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단 대사관 등 외교 대표기관 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1995년 11월 14일 발표된 “우즈베키스탄 내 외교 대표기관 및 국제기구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외교 대표기관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대표부 건물 및 대사 등 대표 관저 건축을 위해서만 토지 소유가 가능함
- 기업 및 기업소유주(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토지의 완전 소유권보다는 보통 영구 혹은 잠정 토지 사용권이 부여됨. 영구 토지 사용권은 토지 소유 및 사용권리가 포함되나 처분 권리는 제외되며 이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토지 소유권자로 영구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잠정 토지 사용권은 영구 토지 사용권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나 부여 기간이 3년에서 10년 사이라는 점만 다름. 토지 사용권은 해당 토지에 건축된 구조물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함께 이전됨
-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상업 및 서비스 부문 설비, 주거지 및 해당 토지의 소유권, 토지 소유 및 이용(리스 포함)권 그리고 자연 자원 소유 및 이용권 취득 자격이 있음.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토지는 내각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임대될 수 있으며 보통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됨

○ 의무 확보

- 부동산권의 근저당 설정권리가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는 반면 관련법규가 제한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며 관행 또한 아직 대부분 시험된 바가 없음
- 우즈베키스탄 민법은 건축물 및 관련 토지 권리에 대한 근저당 설정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 전체 혹은 다른 복합재산권(동산 및 부동산 포함) 또한 저당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저당권 등록에 대한 법규 전반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기업의 자산은 전체보다는 개별로 저당권이 등록될 수 있음. 또한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해당 토지에 대해 동시에 설정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 토지법의 경우 임대 토지의 저당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자 및 이용권자의 저당 설정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어 토지 저당 선행 권리와 상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함. 토지법은 토지 소유자의 저당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 토지 소유는 매우 제한적임

2) 사유화 정책

우즈베키스탄 국유 재산의 민영화 관련 주요 법규는 비국유화 및 민영화에 대한 법(민영화법: Law on De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the Privatization Law)으로 1991년 11월 19일 발효되어 이후 개정된 바 있음. 민영화법은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개념의 법적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 및 민간 법인의 국가소유재산 취득 혹은 국영주식회사 지분 인수 등이 여기에 포함됨.

우즈베키스탄의 민영화는 여타 CIS국가들에 비해 뒤진 편으로 독립 후 초기 수년 동안에는 아파트와 상점과 같은 매우 작은 업체들만 민영화된 반면 거의 모든 산업체 및 기타 중대 기업들은 엄격히 정부통제 범위로 유지되었음. 그러나 1998년 후반 들어 많은 주요 산업 부문들의 주요 기업들의 민영화를 활발히 추진시키기 시작했으며 2003년 4월 17일 채택된 의결 내용(이후 수정)은 2003~2004년 기간 중의 야심적인 민영화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음.

○ 민영화 추진 방법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별로 승인된 국유재산 민영화 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대상을 결정함
- 우즈베키스탄 국유재산 관리 및 창업 지원 국가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Management of State Property and Support of Entrepreneurship, "국유재산위원회"로 약칭)는 국유재산 민영화 과정에 관련된 핵심 기관으로 국유재산 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정부 부처, 협회, 기구, 재벌, 기관 및 지방 정부들에 적용됨

○ 민영화 형태 및 조건

- 우즈베키스탄의 민영화 형태
 - 국영기업을 집단기업, 주식회사 혹은 기타 기업 혹은 합자회사 형태 등으로 전환
 - 국영기업의 대여(추후 해당 대여 기업의 인수 선택권 포함)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국유재산은 개인 혹은 법인에게 경쟁 입찰로 매각되거나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규에 따른 다른 방법으로 매각됨
- 민영화 대상 설비에 대한 제한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비국유화, 민영화 혹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 재산 목록을 정해 두고 있음. 이 목록에는 국가 이익에 직접 관련이 되는 전략 국유 재산이 우선 포함되어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판단에 의거해서만 민영화되거나 비국유화될 수 있는 설비 목록을 정해 두고 있음.
 - 민영화법에 따라 토지, 심층토, 기타 자연 자원 그리고 문화재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비국유화 및 민영화 대상이 아님.
- 외국인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기회
 - 우즈베키스탄 민영화법은 국내인 및 민간 법인, 우즈베키스탄 국외 거주 외국 시민 및 법인, 심지어는 무국적자까지도 민영화된 국유재산의 취득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외국 투자자들은 다음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 참가 가능함.
 - 증시에서 경쟁 입찰 혹은 투자 입찰 그리고 직접 협상 과정에서 외국인에 배정된 주식
 - 합작투자 법인 혹은 100% 외국자본 법인설립을 가능케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가 혹은 외국인투자그룹에 대한 기업주식 전부 혹은 일부 매각
 - 청산(파산)된 기업 자산의 공개 경쟁 입찰(입찰 요건은 사전 공고)
 - 경매 혹은 직접 입찰 방식에 의한 부동산 매각
 - 투자 프로젝트에 근거한 국유 재산 경쟁 입찰 매각
- 외국 투자자들은 민영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가할 수 있음
 - 국영 기업의 자본금 증액 시 투자하여 국영기업을 합작투자 법인으로 전환, 증자분의 일부를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
 - 양허 협약(광업, 전력 공급, 물 공급 및 서비스 설비 기업에 대한 우대 대우)
 - 외국 자본 일부 참여로 설립된 투자 기금, 증권회사 및 투자 은행의 민영화된 국영기업 지분 할당 및 교환
 - 국가소유 토지에 외국 투자자에 의한 "턴키" 베이스의 새로운 기업 건설, 혹은 국가가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미완공 구조물 건축 완공

2007년도에 민영화를 통해 외국기업에 매각된 자산은 1억1천48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배가 증가하였으며 매각된 공기업은 2006년도 22개 에서 2007년도 28개로 증가하였음. 우즈베크 정부는 2007년도 7월에 향후 4년간 1,400개의 민영화 대상기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통신, 에너지, 석유 및 가스, 광산 등 국가전략산업의 대 지분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 섬유, 자동차 부문도 정부가 최소 25%-50%의 지분을 갖도록 되어 있음

3) 언어사용 정책

우즈베키스탄의 공용어는 우즈베키스탄어로 2004년부터 이전까지 공용어로 함께 사용되어 오던 러시아어가 제외된 바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국가 기관들은 우즈베키스탄어로만 문서와 자료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국가 기관들은 여타 언어(대부분 러시아어)로 된 문서 혹은 번역본을 병행하여 발급함.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적 관행은 외국 당사자들과의 계약서는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되는데 러시아어와 두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다른 언어 한 가지로 작성됨. 이 경우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두 언어의 계약서는 각각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국가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모든 계약서는 러시아어 혹은 우즈베크어로의 번역 및 공증본이 첨부되어야 함. 그러나 법인 설립을 위한 특정 등록 서류는 우즈베크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러시아어로만 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 이러한 정책은 공식 문서에 우즈베크어 사용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반영하며 앞으로 점차 우즈베크어가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4) 민법

우즈베키스탄의 민법은 상호 평등, 재산권 보호, 계약 자유, 사생활 불간섭, 민권의 자유로운 행사 필요성, 침해된 권리의 복구 그리고 사법 제도를 통한 권리 보호 등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음.

시민(법인)들은 자유 의지에 따라 민권을 확보하여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 행사하며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 계약 조건에 따라 스스로의 의무와 권리를 설정할 수 있음.

상품과 용역 그리고 금융 자금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하며 상품과 용역의 자유 유통 제한은 안보,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 및 문화 가치 보호 등이 요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민법 관련 행위는 관련 법규에 소급 적용을 받는다고 직접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민법에 적절한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관습 및 전통이 적용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관련 법규 및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음.
 -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우즈베키스탄 민법) 1997년 3월 1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Tax Cod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우즈베키스탄 세법) 1997년 4월 24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Law on Limited Liability and Additional Liability Companies, 2001년 12월 6일 제정
- The Law on Business Partnerships, 2001년 12월 6일 제정
- The Law on Joint Stock Companies and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Rights(주식회사법), 1996년 4월 26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Law on Guarantees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ors' Rights(외국인투자보장법), 1998년 4월 30일 제정
- The Law on the Contractual and Legal Basis for the Activity of Business Entities, 1998년 11월 1일 발효
- The Law on Investment Activity, 1998년 12월 24일 제정
- The Law on Currency Regulation(신폐) 2003년 12월 11일 제정
-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Additional Measures to Stimulate the Foundation and Activity of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 1996년 5월 31일 발표
-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Additional Incentives and Privileges Granted to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s", 1996년 11월 30일 발표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of Unification of Exchange Rates on Internal Currency Market", 2001년 10월 25일 제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for Organization of Operation of the Over-The-Counter Currency Market", 2001년 7월 10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for Further Liberalization of the Currency Market", 2001년 6월 22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Cancellation of Licensing and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Import and Sale of Consumer Goods on Internal Marke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02년 8월 20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the Additional Measures for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s into Foundation of Joint Ventures", 2000년 10월 11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gulation "On the Procedure of State Registration and Record of Business Entities and Issuance of Permits,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the Principal Improvement of System of State Registration for Business Entities", 2003년 8월 21일 제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the Program on De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Enterprises in 2003~2004" 2003년 4월 17일 제정, 이후 수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Measures for Further Perfection of Monitoring of Export-Import Operations", 2003년 9월 30일 제정
- The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n Parameters of the State Budget for 2005", 2004년 12월 24일 제정
-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Measures for Cardinal Increase of Share and Importance of Private Sector in Uzbekistan Economy", 2003년 1월 24일 제정
-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n Measures for Further Liberalization of Foreign Trade Activity in Uzbekistan", 2003년 9월 26일 제정

5) 은행 시스템

1994-1995년 기간 중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자유로웠던 당시에는 100% 민간 은행 개설 사례도 있었으나 이러한 환경은 1996년 10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내통화의 환전 제한조치를 도입하면서 끝이 났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한된(최고 특권에 해당되는)

소수의 기업들에 한해 중앙은행을 통한 환전 면허를 부여하는 차별적인 제한 환전 제도를 도입했음. 이 당시 많은 민간 은행들이 폐쇄되었으며 또한 상당수 은행가들이 구금되거나 투옥되었음.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경제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외경제활동 담당 NBU(National Bank of Uzbekistan)를 설립하여 정부의 1차 외환 통제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음. 중앙은행의 기능은 CBU(Central Bank of Uzbekistan)가 담당하며 중앙은행은 타슈켄트 내 전체 12개 구 모두에 지점을 두고 있음. 중앙은행은 정부의 공식 외환 환율을 결정하는 주체이며 국내 및 외국은행들에 대한 환전 면허 부여 및 취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우즈베크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꼽히고 있음.

2005년 1월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에는 우즈베크 전역에 805개 지점을 보유한 35개 상업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13개 민간 보유 은행, 6개 외국 자본 은행, NBU 및 인민은행(Peoples Bank, 저축은행)과 같은 2개 국영은행 그리고 나머지 다양한 소유구조를 가진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 은행 제도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 Central Bank of Uzbekistan)이 관할하여 환율, 자금유 및 상업은행 이자율 등을 통제함. NBU(National Bank of Uzbekistan)는 최대의 국영은행으로 1991년 설립되어 66개국 430개 은행들과 코레스 관계를 가지고 있음.

NBU의 자본금은 미화 5억 1,380만 달러로 대외차관을 할당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NBU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101개로 총 미화 31억 달러에 달함. 외국인투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정유, 화학, 석유화학, 식품가공 및 농산물 생산 분야 등임. 33개의 민간 상업은행은 몇 개 범주로 구분될 수 있음. 정부보유지분이 큰 은행들이 첫 번째 그룹으로 전략적인 은행으로 간주되어 합작투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에서 경영을 100% 통제하고 있음. 우즈베크 대형 은행 민영화를 거두고 있는 세계은행은 NBU 자본금의 40%, Asaka은행의 50% 주식의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1996년에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NBU 및 우즈베크 자동차협회가 설립한 Asaka 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산업 개발 자원 조달이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음. EBRD (유럽 재건 개발 은행)는 우즈베키스탄 중소기업 개발을 위해 미화 3천만 달러를 할당함.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형으로 분류되는 은행들은 Pakhta 은행(면화 은행), Uzpromstroy 은행 (산업 은행) 및 Narodny 은행(인민은행) 등이 있으며 이들 은행들은 Asaka 은행 및 NBU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은행 자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이보다 작은 두 번째 그룹의 은행들은 “전문화된 산업 은행”으로 구소련 시대부터 유지된 제도인데 이들 은행들은 각각 특정 산업 부문에 금융을 제공하며 이들 은행의 주된 기능중 하나는 담당 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국내 및 외국 기업을 발굴하는 것임. 이들 은행들은 또한 우즈베크 정부가 민영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룹으로 기업 경영 원칙을 적용하여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외에 대규모 주택 건설을 정부가 주도하기 위해 주된 모기지 은행으로 Uzjilstroy 은행(우즈베크 주택건설 은행)이 설립되었음.

우즈베크 정부 보유 지분이 가장 작은 은행들이 세 번째 그룹으로 전문화 은행들이기도 한데 국물산업을 취급하는 Galla 은행을 제외하고는 우즈베크 정부는 별다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두 번째 및 세 번째 그룹 이외의 은행들에도 정부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은행들은 대주주가 곧 은행 자체 고객이기도 함.

모든 상업은행들은 기업금융 서비스 이외에도 예금 및 장단기 대출 등 소비자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은행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고 인플레이션 심하여 은행에 돈을 맡기는 고객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중소기업에 할당된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5년간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 보증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한 은행들은 여전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우즈베키스탄 상업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제공한 전체 여신규모는 2007년도 4조 4,7천억숨(미화 약 14억7천만 달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시중은행은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에 매우 취약하며 시장여건에 따라 자체 경영 전략을 수립할 독립성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음.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Uzbek-Turkish(UT)은행, ABN Amro 은행, Uzbek International 은행(Uzprivate bank) 그리고 우즈대우은행을 인수한 우즈산업은행(UZKDB) 등 4개의 외국은행들이 있으며 중앙아시아 협력 개발은행 및 이란 Soderot 은행 지사가 있음. 이들 4개 외국은행들은 모두 서방은행들의 안전하고 숙련된 서비스로 상업 및 투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08년부터 상업은행 설립 시 최저자본금을 현재 5백만 달러에서 5백만 유로로 인상하고, 개인은행(Private bank)은 최저자본금을 현재 2.5백만 달러에서 2.5백만 유로로 인상조치.

6.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특성 및 도시별 기후

우즈베키스탄은 위도상으로 보면 한반도보다 다소 높지만 기후는 우리나라보다는 더운 편이다. 전체적으로 대륙성 기후로 볼 수 있고 하절기가 건조한 반면 동절기는 다습한 편이다. 도시 별로 기상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도시 별 기후는 판단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수도인 타슈켄트 보다는 더운 편이다. 평균 기온은 타슈켄트를 포함한 북부지역은 1월 평균 영상 3도℃ 이고 남부지역은 영상 3도℃ 수준이다. 북부지역은 7월 평균 영상 26도℃이고 남부지역은 영상 32도℃ 정도이다.

기후가 양호한 편인 타슈켄트 지역도 한여름(6월-8월)에는 4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무척 더운 편이지만 여름철에는 강우량이 거의 없고 습도가 낮아 지내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 동절기는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기온이 높은 편이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낮지 않지만 동절기 역시도 지내기 어렵지는 않다. 강우량은 전체적으로 500ml 정도로 동절기에 집중해서 내리고 있고 눈은 아주 추운 한겨울에만 내린다.

2) 출장 시 추천복장

우즈베키스탄 기업인들 또는 정부인사들과의 면담 시 반드시 정장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장 시 복장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준비하면

무난하지만 여름이 우리보다 다소 긴 편으로 5월이나 9월도 더울 수 있기 때문에 하복이 바람직하다. 겨울철은 우리나라 보다는 덜 추운 편이지만 동복을 착용해야 하고 겨울철 눈 또는 비가 많이 내리므로 외투보다는 두툼한 레인코트가 실용성이 높다.

여름철에는 이 나라 공무원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반소매 남방차림을 많이 하므로 출장자도 이러한 차림이 실례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봄(4-5월), 가을(9-10월)의 경우에는 낮에는 온도가 높지만 밤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므로 얇은 스웨터나 잠바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4시간으로 한국이 24:00일 때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20:00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서머타임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시차는 년 중 동일하다.

2) 근무시간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직장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17:00까지 이고 관공서, 은행 및 주요 기업들은 토요일은 휴무하여 토, 일요일은 연휴가 된다.

관공서는 대민 관계 업무는 오전에만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관공서 업무는 오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은행은 16:00까지만 업무를 한다.

상점들의 영업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보통은 오전 10:00부터 저녁 18:00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요일은 대부분 폐점된다.

다. 도량형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도량형의 표기에 있어서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업용으로는 삼상 380V가 공급되고 있고 일반용으로는 220V가 공급되고 있으며 주파수는 모두 50Hz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송전시설의 낙후로 전압이 일정치 않아 일정한 전압이 요구되는 전자제품 등은 안정기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우즈베키스탄의 비자발급은 단순히 외국주재 우즈베크 대사관에 신청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 하고 반드시 우즈베크 내 현지기업, 대사관, 무역관 등의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동 초청장을 우즈베크 외무성에 접수하면 접수 후 5일(근무일 기준) 이후에 방문자가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지역의 우즈베크 공관에 외무성에서 비자발급 허락 전문을 발송한다. 이에 따라 비자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어도 비자발급 희망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는 초청장 발급 자에게 여권 전면 기재 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발급일, 유효기간)과 현재 소속기관 근무증명서를 통보해 주어야 원하는 한다.

비자신청 시 외국 주재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접수할 경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크 외무성에서 외국주재 공관에 발송한 전문번호와 전문 발송일자를 초청장 발급자로부터 확인하여 비자 신청 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자 발급 시 대사관에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하는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5일 이내는 30불, 한달 이내는 60불을 납부한다. 한편 복수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 공관에서 받기가 어렵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 비자발급처

- 발급장소: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한국내의 경우)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701
- 전화: (02)574-6554 / 팩스: (02)578-0576

2)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특별한 절차는 없으나 입국 시 출입국 신고서상에 외환 보유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동 출입국 신고서는 2장을 작성하여 한 장은 여행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출국 시 다시 새로운 출입국 신고서 2장을 작성하여 공항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의 서명을 받은 후 1장을 돌려받게 된다. 출국 시에는 별도 1장에 잔액을 기재한 후 입국 시 받은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 공항당국에서는 입국 시와 출국시의 외환보유액을 비교하여 입국시보다 많은 외화보유액을 보유할 경우 차액을 압수한다.

입국 시에도 보통수준 이상의 외화보유액을 신고할 경우 실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개인소지품에 대한 검색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화물을 운송할 경우 물품검사 및 관세납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인 면세품 보유한도는 담배 2보루(200개피), 브랜디 또는 위스키 1리터로 제한된다.

3) 공항 시내 교통편

공항 시내 교통편은 버스, 택시 등이 있으나 외지인, 특히 처음 우즈베크를 방문하는 경우 이용이 어렵다. 가장 좋은 것은 지인을 통하여 교통편을 제공받는 것이며 투숙호텔에 픽업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주의할 점

택시는 타기 전에 가격을 흥정해야 하나 러시아어 혹은 우즈베크어를 모르면 흥정이 안되며 이 경우 어느 정도 바가지 요금을 각오해야 한다.

바. 환율/환전

1) 화폐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93년부터 자체 화폐인 Sum을 발행하여 운용하고 있다. 주화는 5, 10 Sum짜리 두 가지 종류만 운용되고 있고 지폐는 10, 25, 50, 100, 200, 500, 1000 Sum 등 9가지 화폐가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다.

2) 환율

우즈베키스탄의 2008. 7월 기준 국가은행 기준율 기준 공식환율은 1불당 1,310 Soum 대이며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2003.12.31일 기준 국가은행 기준율 기준 공식환율은 1불당 976Soum이었다.

3) 환전

환전은 공항, 주요 호텔, 은행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현지화의 급속한 평가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솜화의 절대통화량을 억제하고 있어 달러화를 솜화로 환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 신용카드 사용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용카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숙이 가능한 특급 혹은 1급 호텔에서는 비자, 아멕스, 마스터스, 다이너스 등 주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여행사나 항공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5) 우리나라와의 직항편

서울에서 타슈켄트까지 아시아나 항공이 1주일에 2편, 우즈베크 항공이 1주일에 2 편씩 (성수기에는 3편) 운항되고 있다.

2008.9월부터 대한항공도 서울- 타쉬켄트간 주3회 취항하고 있다.

6) 3국 경유

제 3국 경유의 경우 모스크바 등지를 경유할 수 있다. 타슈켄트와 모스크바간에는 매일 수 편의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경유할 수도 있는데 타슈켄트 알마티 간은 우즈베크 항공에서 하루 1편(토요일 제외)을 운행하고 있다.

7) 저렴한 예약 방법

항공권은 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예약 방법이다.

8) 국내, 국제편지, 소포, 특사운송회사 가격 및 이용방법

DHL, TNT Express 등 특사편 이용이 가능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기본 250그램 기준 DHL은 54불+6%이며 TNT Express는 43불이며 무게에 따라 가격이 올라 간다. EMS도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특사편에 비해 약 2/3 수준이다. EMS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2-3주 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급한 것은 특사편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 우편은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특사편이나 EMS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우편은 일반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기본 요금은 100솜이다.

9) 국내, 국제전화 거는 방법

국내 전화는 지역번호를 먼저 누른 후 해당 번호를 누르면 된다. 국제전화 호출번호는 810이며 국가코드, 지역코드, 가입자 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 서울로 전화할 경우 810+82+2+가입자 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시외전화는 8번을 누르고 신호음이 들리면 지역번호와 가입자번호를 누르면 된다.

사. 교통/통신

1) 교통

서울에서 타슈켄트까지 아시아나 항공이 1주일에 2편, 우즈베크 항공이 1주일에 2 편씩 (성수기에는 3편) 운항되고 있다.

2008.9월부터 대한항공도 주3회 서울- 타슈켄트간 취항하고 있다.

□ 국내교통

○ 택시

우즈베키스탄에는 노란색 차량으로 지붕 위에 "Taxi"라고 쓰여 있는데 공항을 제외하고는 찾기가 쉽지 않다. 대신에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길가에 서는 것은 모두 택시라고 볼 수 있는데 불법 영업도 아니고 시내 치안이 양호한 관계로 밤이 아니면 타도 무방하다. 콜택시 서비스도 가능한데 호텔 등에 부탁하면 쉽게 불러 주는데 콜택시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일반적으로 매우 노후된 편이다.

정식택시라고 하더라도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요금은 운전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통상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2,000soum 정도이고 가까운 거리는 500-1,000soum 정도면 된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택시들은 초행길의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는데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가 5-10분에 불과하므로 3,000-4,000 soum 정도만 주면 된다.

○ 시내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단은 크게 지하철, 트램바이(궤도전차), 트랄레이부스(전기운행 버스), 일반 버스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지하철은 3개 노선이 운행되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고 청결한 편이고 요금은 250soum이다.

나머지 대중교통은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운행구간이 우즈베크어 내지 러시아어로만 표기되어 있고 청결도가 떨어져 외국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 국제공항

우즈베키스탄의 국제공항은 타슈켄트 공항 한 곳인데 시내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내륙에 위치한 타슈켄트는 항공교통이 활발한 편이어서 국제는 물론 국내선 항공기의 취항이 많은 편인데 이에 따라 타슈켄트 공항은 항상 붐비는 편이다.

타슈켄트 공항은 2002년 초 개, 보수가 마무리되어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하였으며, 공항 출국절차도 승객에게 편리하도록 바꾸었다. 즉 승객은 먼저 수화물을 발송하고 보딩 패스를 받으며, 그 후 세관심사, 여권심사 순으로 이어진다(이전에는 세관심사를 마친 후 안으로 들어가서 수화물을 발송)

□ 국제항구

우즈베키스탄은 내륙국가로 항구는 전혀 없다.

2) 통신

□ 국제통신

우즈베키스탄은 전화선 및 교환기 등이 러시아 시절 설치된 것이 주로 운영되고 있어 통신 사정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국제통신의 경우에는 국내통신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통화 중 이유 없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다. '96년부터 영업하고 있는 영국계 합작 통신 회사인 BUZTON은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기관이나 기업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통화요금은 타슈켄트에서 서울로 전화할 경우 1분당 \$2.21로 매우 비싼 편이다.

□ 국내통신

국내전화 사정은 국제전화 라인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전화라인과 교환기의 노후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환기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어 전화국번 앞에 "1"번이 붙은 전화의 경우에는 디지털라인으로 통화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시내전화 요금은 분당 \$0.14로 매우 비싼 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MTS, UNITEL, COSCOM, Perfectum Mobile, Uzbektelecom 등 5개 회사가 무선통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MTS, UNITEL, COSCOM 는 GSM 방식이며, Perfectum Mobile, Uzbektelecom는 CDMA 방식이다

□ 매스미디어

우즈베키스탄의 언론은 철저히 정부의 관리하에 있어 주요 보도기사의 경우 신문 별로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기관지 성격의 Naordnoye Slova가 정부의 주요 정책, 법령 등이 발표되어 널리 읽히고 있으며 동 신문은 우즈베크어로 Halq Suze Slova란 이름으로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은 Pravda Vostoka지는 러시아어로 발행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구소련의 Pravda지와 관련이 있었으나 현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도 역시 국영기관에 의해 발행되어 내용은 Naordnoye Slova와 거의 동일하다.

우즈베키스탄에는 Uzbek TV-Radio Broadcasting Company라는 국영 방송국에서 4개의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Uzbek TV I , Uzbek TV II , Tashkent Channel, International Channel 등이다.

방송언어는 우즈베크어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어는 일부 뉴스 및 러시아에서 수입한 드라마 등에 국한되고 있다. 이는 우즈베크어 사용 장려 정책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 호텔/식당

1) 호텔

□ 타슈켄트

- Intercontinental Hotel
 - 전화: (998-71) 120-7000
 - 위치: 타슈켄트 Unosabad
 - 가격은 싱글 195불, 더블 220불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서비스 및 시설은 우즈베크 내 최고 수준
- Dedeman Hotel
 - 전화: (998-71) 120-3700
 - 위치: 타슈켄트 시내 중심가
 - 가격은 싱글 160불, 더블 210불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서비스 및 시설은 우즈베크 내 최고 수준
- Tashkent Palace Hotel(구Le Meridien Hotel)
 - 전화: (998-71) 120-6600
 - 위치: 타슈켄트 시내 중심가
 - 가격은 싱글 180불, 더블 210불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고 서비스 및 시설은 인터 콘티넨탈보다 다소 처지는 수준임.
- Uzbekistan Hotel
 - 전화: (998-71) 120-7767
 - 위치: 타슈켄트 시내 중심가
 - 가격은 싱글 100불, 더블 160 수준으로 다소 오래된 건물이기기는 하지만 최근에 개, 보수를 완료한 층의 경우 청결하고 시설도 양호한 편임.
 - 구소련 시절부터 운영된 호텔로 서비스는 기대 수준 이하임.
- Grand Mir Hotel
 - 전화: (998-71) 140-2000
 - 위치: 타슈켄트 시내 중심가(아이벡 전철역 근처)
 - 가격은 싱글 140불, 트윈180불 이며 청결하고 시설도 양호하다.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서 주변에 한국 식당이나 가게가 많다. 한국 출장자들이 주로 머무는 호텔로 여행사를 통하면 1/2가격에 예약이 가능함.

□ 사마르칸트

- Afrosiab Hotel
 - 전화: (998-662) 31-1341, 31-2080. 31-2683
 - 위치: 사마르칸트 시내중심가
 - 사마르칸트에서는 최고급 호텔로 싱글 90불, 더블 140불 수준으로 시설 및 객실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호텔 예약 싸게 하는 방법

호텔 예약은 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저렴한 방법이다. KOTRA 무역관에서도 출장자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식당

□ 한 식

- 김씨네(구 월드컵)
 - 전화: (998-71)126-2340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한국대사관 옆)
 -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식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메뉴의 다양성은 덜 하지만 청결하고 맛이 좋은 편임.
- 한국관
 - 전화: (998-71)252-3322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식당. 한국과 비슷한 가격 수준에 메뉴가 다양하고 맛이 괜찮다.
- 미가(구 코리아나 식당)
 - 전화: (998-71)128-8456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코리아나 호텔 내에 있어 이용이 편리함. 일식도 같이 제공되고 가격은 한국 수준임.
- 미도리
 - 전화: (998-71)120-6974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교민이 운영한다. 시내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식과 일식 가능.
- 우리집(구 월드컵)
 - 전화: (998-71)252-3461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대사관 영사과 옆 골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산물 음식이 특징이다.
- 가마솥
 - 전화: (998-71)128-8008
 - 위치: 타쉬켄트 시내중심가
 - 한국처럼 숯불에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

□ 서양식 및 현지식

- 카라반
 - 전화: (998-71) 252-7464, 150-7555)
 - 위치: 시내중심가
 - 실내를 우즈베크 전통 디자인으로 장식, 샤슬릭 전문

- 아리스톤
 - 전화: (998-71) 233-3881, 233-5080
 - 위치: 시내중심가
 - 양갈비 샤슬릭 전문

□ 대표적인 먹거리

- 뽕콰
 - 우리나라의 볶음밥과 비슷하지만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다소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은 '기름밥'이라고 부른다.
- 리뽀쉬까
 - 우즈베크인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주식으로 원형의 모양의 피자빵과 비슷하며 둘레는 두껍고 가운데는 얇고 편편하며 표면에 깨나 향신료를 뿌린다.
- 샤실릭
 - 미리 향신료로 양념한 양, 소, 닭, 돼지고기를 꼬치에 끼워 숯불에 구워먹는 음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 삼사
 - 밀가루 반죽을 만두피 빚는 것처럼 얇게 민 후 녹인 버터를 골고루 묻혀 돌돌 말아서 길어진 반죽을 한 입 크기로 잘라 다시 한 번 밀어 속(양파와 고기 다진 것)을 넣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 한국의 고로케와 만두의 중간쯤 되는 음식이다.
- 뽕메니
 - 우리나라 만두와 비슷하면 단지 크기가 작을 뿐이다.
- 슈르빠
 - 고기를 끓인 후 감자, 양배추, 양파, 당근 등을 넣어 끓인 국이다.
- 라그만
 - 우즈베크 식 짬뽕이라 불린다. 슈르빠처럼 국물을 만든 후 야채와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고 국수를 넣어 만든다.
- 수말락
 - 이 음식은 주로 나브루즈 기간 중에 빵과 함께 먹는다. 밀을 발아시켜 갈아 밀가루와 섞어 기름을 두른 후 냄비에 조금씩 물을 부어가며 하루를 계속 놀지 않게 젓는다. 설탕을 넣지 않지만 단 맛이 난다.
- 차이
 - 식사할 때, 손님이 왔을 때,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한여름에도 그리고 다과를 할 때에도 늘 차를 함께 마신다.

자. 관공서 관행

우즈베키스탄의 관공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남아있어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편 업무 전산화 등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 민원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이 많고 처리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

관공서의 민원서류 접수는 대부분의 기관이 오전에만 가능하고, 반대로 신청민원의 확인 등은 오후에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관공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통역을 대동해야 하며 중요한 것이 아니면 현지인 직원 등을 시키는 편이 편리하다.

차. 공휴일

2008년 중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공휴일 명	대상 지역
1. 1	신년휴일	전 체
3. 8	국제여성의 날	
3.21	Navruz(봄의 축일)	"
5. 9	추모의날(승전기념일)	"
9. 1	독립 기념일	"
10.1	스승의 날	"
10. 1	라마단 말일	"
12.8	제헌절	"
12.8	희생제일	"

주: 라마단 말일이 일요일일 경우 월요일 휴무/ 징검다리 휴일인 경우, 예를 들어 공휴일이 목요일이면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바로 그 다음 일요일을 근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장 시 유의해야 한다.

1) 주요 축제일

○ 국제 여성의 날, 나브루즈, 독립기념일, 라마단 말일, 희생제 등

2) 출장지양 기간

나브루즈 전후 1주일 정도, 라마단 기간 등에는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라마단은 1개월 정도의 기간에 달하므로 사전에 라마단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카. 여행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 의복준비

전반적으로 여름이 다소 길고(5월-9월) 온도가 높고 건조한 반면 겨울은 한국보다 다소 기온이 높은 반면 다습한 편이다. 대체적으로 의복은 한국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된다.

□ 전기규격

전압은 220V로 한국과 동일하나 주파수는 50Hz로서 한국과 달라 모터가 달린 전자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2) 여행여건

□ 치안

우즈베키스탄은 경찰국가라고 할 만큼 경찰수가 많고 전반적으로 국민성이 온순해 치안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최근 경제상태가 악화되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절도 및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회수 및 잔악성은 그리 심각한 편은 아니다.

□ 응급

전화로 "03"을 누르면 앰불런스가 호출되며 관련비용은 무료이다. 한편 시내의 종합 병원들은 돌아가면서 응급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진료비 또한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병원의 시설 및 약품미비 등으로 외국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UN Clinic(전화: 120-6091/2)의 경우에는 상담비만 \$100이고 추가적으로 진료비 및 약품비 등이 청구된다.

□ 팁관행

팁은 아직까지 관행으로 정착한 상태는 아니다. 특히 택시는 미터기가 없이 기사와 승객의 합의에 의해 지불하므로 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들 자주 이용하는 식당, 이발소 등지에서는 최근 들어 팁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어 요금의 5% 미만의 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호텔 등의 경우 10%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므로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가방을 옮겨준 Bell Boy에게는 1,000soul, 방 청소부에게는 1,000soul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적당하다.

□ 식수

수돗물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고 석회분이 많아 식수로 적합하지 않고 미네랄 워터를 구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고급식당들은 정수기로 처리한 식수를 제공하므로 그대로 마셔도 무방 하지만 현지식당 등에서는 반드시 미네랄워터를 주문해야 한다.

□ 이발소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이발소가 2군데 있으며 요금은 단순 커트의 경우 남자는 9,000 soul, 여자는 12,000soul내지 14,000soul 정도이며 남자 어린이는 8,000soul 정도이다.

□ 구두닦이

구두닦이는 전혀 찾기가 불가능 한바 자기가 직접 닦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쇼핑

□ 물가

전반적인 물가는 매우 싼 편이지만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살만한 물건은 찾기가 힘들고 가끔씩 발견되는 외국에서 수입된 유명 상표의 제품들은 가격이 한국보다도 비싼 편이다.

□ 쇼핑장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취약하고 외환부족으로 상품의 수입이 거의 제한되다시피 하여 쇼핑가 등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구소련권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Zum"(중앙백화점)이 있으나 이곳에서도 외국인 살만한 물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특산품

오랜 사회주의 경제의 영향으로 특별한 특산품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행객들은 벌꿀(천연꿀)이나 호두 껍 것, 건포도 등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

□ 위험 지역

인적이 드문 밤길 등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되도록 2인 이상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적 금기 사항

이슬람 문화권이며 다종교 국가이므로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4) 기타

엄격한 외환관리 정책으로 출입국시 외화 반출입을 제한하는바, 입국 시 작성했던 세관 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신고한 금액 한도 내에서 외환을 반출할 수 있다.

다. 유용한 연락처

현지 관공서

기관 명	주 소	전 화	팩 스
외무부 비자과		(998-71)233-4501	(998-71)239-1410
대외경제부	Taras shevchernko Street 1	(998-71)23 8-5000	(998-71)238-5200
외국인투자유치청	Taras Shevchernko Street 1.,	(998-71)238-9100	(998-71)238-9200
국가사유화 위원회	Uzbekistan Avenue 55	(998-71)259-2090	(998-71) 150-7212
내무부	Yu. Rajabiy Steet.1	(998-71)233-3882	
재무부	Mustakilik sq.,5 Tashkent	(998-71)233-7073	(998-71)244-5643
국세청	Uzbekistan Avenue 3	(998-71)120-7631	(998-71)120-7641
타슈켄트시청	Movarounnakhstr.,6,Tashkent	(998-71)233-9069	(998-71)233-6588

경제단체

기관명	주 소	전화	팩스	상세정보
상공회의소	1A, Usman Yusupov str.	(998-71)233-0699	(998-71)233-379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sinessmen	Amir Tumor Street.2A	(998-71)234-9679	(998-71)234-9679	
NBU	101, Amir Temur str.	(998-71)233-6070	(998-71)233-3200	국영은행

한국기관

기관 명	위 치	전 화	팩 스
대사관	Afrosiab7,Tashkent	(998-71)252-3151/3	(998-71)120-7248
무역관	Afrosiab7,Tashkent	(998-71)252-1435/6	(998-71)252-1437
한국교육원	타슈켄트 시내	(998-71)191-8183	(998-71)120-6434

콜택시

회사 명	전화
TAXI	052
TAXI EKIPAT	082
KALAMAT	063
TAXI VOVAT	239-2222
TAXI LUKS	120-1111
TAXI EXPRESS	239-9999

□ 유용한 현지어 표현 (사용언어)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어라는 자체 언어를 가지고 있고 구소련 시절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92년 독립 후 민족주의 운동과 더불어 우즈베크어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살라마리쿰. (안녕하세요.) - 우즈베크어로서 일반적 표현
- 즈드라스트브이쎄. (안녕하세요.) - 일반적 표현
- 도브러에 우뜨러. (안녕하세요.) - 아침인사
- 도브리 진. (안녕하세요.) - 낮 인사
- 도브리 베첼. (안녕하세요.) - 저녁 인사
- 도브라야 노치. (안녕하세요.) - 밤 인사
- 스콜까? (얼마입니까?)
- 스파씨바.(고맙습니다.)
- 이스비니쎄. (미안합니다.)

파. 관광명소**1) 관광명소****□ 부하라**

- 중세적인 분위기
- 둥근 지붕의 시장 타키
- 물가의 차이하나에서 쉬기도 하는 랴비 하우스
- 사막 속에서 발굴된 마고키 아타리 사원
- 사막의 등대 칼란 미니레트
- 구소련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슬람 신학교 미르 아라프 메드레세 (1429년설립)
- 부하라 왕의성 아르크

- 독특한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발라 아우스 사원
- 4개의 미나레트가 있는 차르 베크 메드레세
- 부조장식이 훌륭한 이스마일 사마니묘(900년 건설, 사마니 왕조 왕의 묘)
- 샘이 솟아나는 영묘 차슈마 아유프 묘(차슈마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욥)
- 정감 어린 풍경이 있는 키로프 공원
- 시토라 이 마히 호사 궁전
- 세이페딘 보하르지 묘와 부얀 쿨크칸 묘 (13~14세기 건물)

□ 타슈켄트

- 이슬람교의 근원지로서 오아시스 도시의 역사를 지님.
- 도시의 중심은 혁명광장
- 지금도 활동중인 이슬람교 본청, 바라크 칸 메드레세 (1531년 창건)
- 바자르를 장식하는 소중한 꽃들
- 우즈베크인 최대의 영웅 Amir Tumir 박물관
- 우즈베키스탄 방송 탑에서 도시 전체 조망
- 중앙아시아에서 발레를 볼 수 있는 나보이 극장
- 1시간 거리의 "침칸"산에서의 스키(11~3월)

□ 히바

-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 노예 시장이었던 바로타 활발 다르바자 (판만의 문)
- 바로타 타슈 다르바자 (타슈의 문)
- 최초로 세워진 히바의 학교, 이슬람 호자 메드레세와 미나레트
- 미완성의 미학, 마흐무크 아민 칸 메드레세와 미나레트 칼타 미나르
- 어떤 시인의 죽음, 파흘라반 마흐무드 묘
- 선망과 두려움이 뒤섞이는 하렘의 나날, 타슈 하울리
- 오래된 요새, 쿠냐 아르크
- 대상들의 숙소였던 콤플렉스 아라쿨리 칸 메드레세
- 지하에 저수지가 보관되어 있는 쿠틀루크 무라트 이라크 메드레세(1804~12년에 건설)
- 속인의 이해를 초월한 직인예술, 주마 사원
- 내성에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이트 알라우딘 묘 (14세기 묘)

□ 페르가나와 코간트

- 페르가나
 - 약초가 풍성한 바자르
 - 휴식 장소로 적합한 고리키 공원
- 코간트
 - 향토 자료관이 있는 후도야르 칸 궁전
 - 서로 돕는 정신이 만들어진 페르가나 운하
 - 미이라가 안치되어 있는 마르달리 칸의 묘
 - 차미 모스크 (1810~12년)
 - 날레부다비의 모스크바와 메드레세

2) 주요 쇼핑센터

- ‘쭈’мага진 (타슈켄트 중앙백화점)
 - 위치: 나보이 극장 옆
 - 시간: 09:00 – 19:00(평일),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쭈’이라는 말은 러시아어로 중앙 백화점을 의미하는 머리글자 모음이다. 구 소련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적한 소규모 백화점 정도로 볼 수 있다.
- 타슈켄트 프라자
 - 위치: 인터콘티넨탈 호텔 옆
 - 시간: 월-토 09:00 – 18:00(토요일)
 - 인터콘티넨탈 호텔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아 모르는 사람도 많다. 개인 고급상점을 비롯, 타슈켄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센터로 지하에는 TESCO, JVC대리점, 문구점 등이 있으며 1층에는 아디다스, 리복 등의 스포츠 용품과 여행사, 제과점, 2층에는 세계적 상표의 고급 의류 및 화장품 점이 줄지어 있다.
- 미르 마가진(MIR Supermarket)
 - 위치: 브로드웨이 내 위치.
 - 시간: 연중 무휴, 10:00 – 20:30
 - 우즈베크와 터키의 합작회사로 주로 터키산이 많다. 일반 식료품 및 잡다한 생활용구를 구비하고 있으며 고기가 싱싱하고 좋다. 슈퍼 외에도 1층과 2층에 옷, 가구, 신발, 스포츠 용품점 등이 있다. 한국인 및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가게이다. 술과 돼지고기 종류는 판매하지 않는다.
- 아르두스(Ardus Supermarket)
 - 위치: 브로드웨이 내 위치.
 - 시간: 월-토 10:00 – 20:00, 일요일은 휴무
 - 우즈베크와 독일 합작회사로 다양한 식료품과 시계, 옷, 생필품 등을 구비하고 있다. 알라이스키 바자르 옆에도 있다.
- 미라발(MIROBOD)
 - 위치: 카스마나프타 지하철 역 앞
 - 시간: 연중 무휴, 09:00 – 21:00
 - 미르와 아르두스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세탁소, 사진관, 환전소도 있다.
- 홀랜드마켓(Holland Market)
 - 위치: 알라이스키 바자르 옆
 - 시간: 연중 무휴, 09:00 – 19:00
 - 네덜란드와 합작 상점으로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여서 쇼핑을 즐기기에 부족하다. 옷, 신발, 식료품 등을 구비하고 있다.
- 우즈베김(Uzbekim)
 - 위치: 한국 대사관 옆 각종 생필품 및 소시지, 유제품 판매. 러시아 물건이 많다.

○ 나보이 전자상가(Navoy Market)

- 위치: 나보이 거리를 따라 약 2킬로미터 정도 줄지어 있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 제품을 취급한다.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를 연상하게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영세한 편이다. 각 가게마다 비슷한 제품을 진열하고 있으나 가격 흥정이 가능하고 가격차는 심한 경우 2배까지 날 수도 있다.

3) 기념품, 특산물 등

기념품으로는 우즈베크 특유의 문양을 넣은 접시와 이슬람 풍의 인형 등이 있으나 포장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산물로는 상황버섯, 석류 생즙, 천연 꿀 등이 있으며 러시아에서 수입되지만 차가버섯, 녹용 등도 있다. 상황버섯의 경우 국내에 반입할 경우 1-2킬로그램 이내에서 허용되는 편이다.